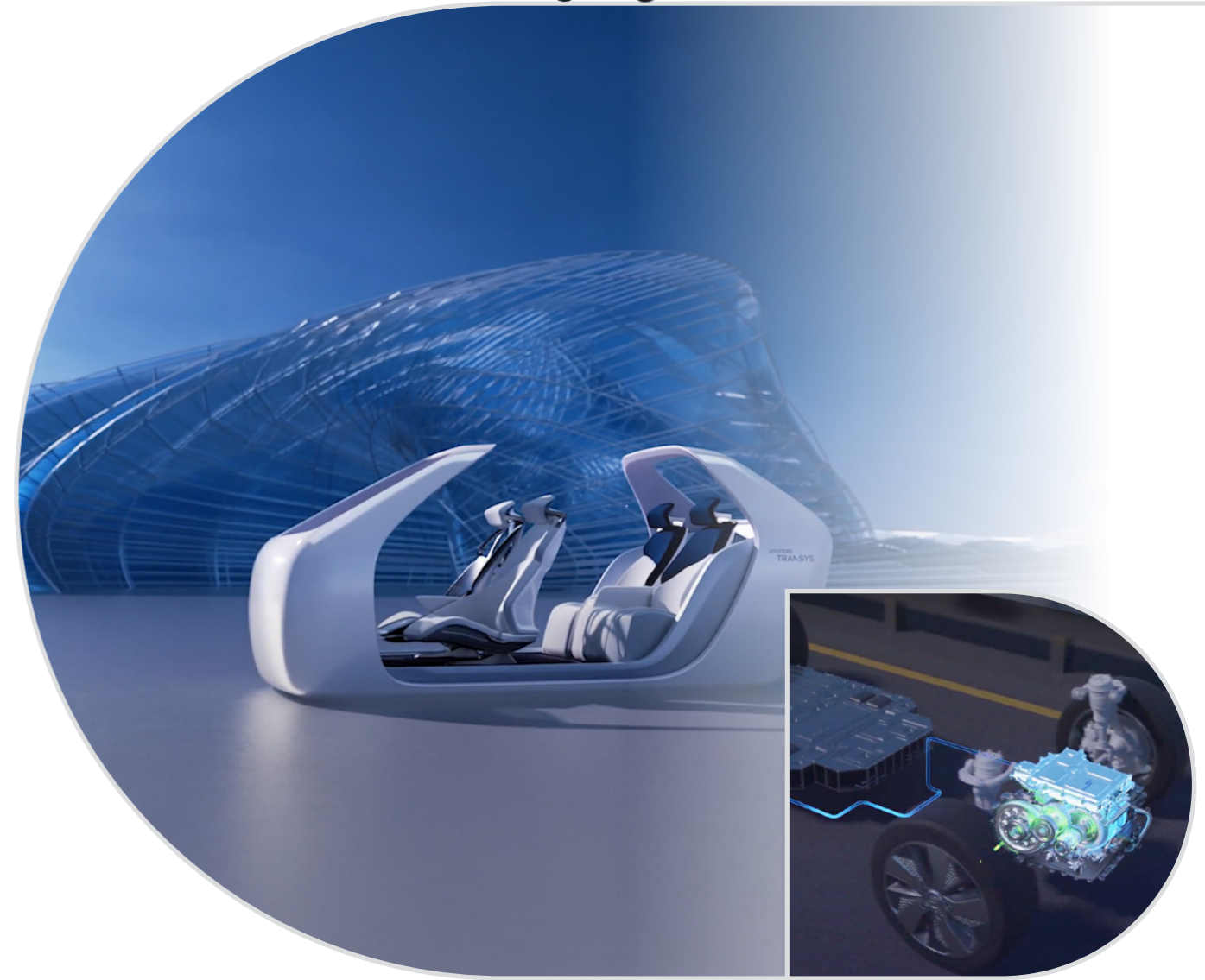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HYUNDAI TRANSYS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HYUNDAI TRANSYS

HYUNDAI TRANSYS Compliance Program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HYUNDAI TRANSYS Compliance Program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실천하며 열심히 근무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혁신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담합 방지와 불공정 거래 개선,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현대트랜시스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과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으며, 공정위의 CP등급평가에서 'A등급'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뜻깊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준법경영은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는 회사의 경쟁력을 해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임직원에게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트랜시스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와 윤리 준법 경영, ESG 경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백 철 승

현대트랜시스 규범준수 방침

현대트랜시스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창조적 리더'로서 전동화 파워트레인 및 자율주행차용 시트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현대트랜시스는 내부적으로 개개인의 윤리성을 높여 자체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고객사와 협력사 나아가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1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모든 사업 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국가 정책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 및 사내 규정을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따른다.

2

모든 임직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3

모든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동료, 파트너,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책임을 다한다.

4

규범준수 책임자는 규범준수 방침과 관련하여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

5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한다.

6

규범준수 방침이 적용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위반 사실이나 문제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규범준수 책임자 또는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금지한다.

7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CONTENTS

부문별 중점 속지 조항	006
편람 개정 이력	009
주요 법 개정사항 반영 이력	009

I.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1. CP(COMPLIANCE PROGRAM)의 개념	013
2. CP(COMPLIANCE PROGRAM)의 필요성 및 목적	013
3. CP의 8대 구성요소	014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015
5. 사전검토 및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보고절차	016
6.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017

II. 공정거래법 실무

1. 경쟁법 개요	019
2. 불공정거래행위	021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22
4.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042
5. 기업결합	053

III. 하도급법 실무

1.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060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065
3. 발주자의 의무사항	101

IV.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

1.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104
2. 인지단계	104
3. 조사단계	105
4. 위원회 상정	111
5. 위원회 심의	114
6. 합의단계	117
7. 의결	119
8. 의결서 송달	119
9. 불복절차	120

V. 공정거래협약

1. 공정거래협약의 개념	123
2. 공정거래협약의 세부 내용	123
3. 공정거래협약 절차	126
4. 협약이행 평가 및 인센티브	127
5.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128

VI.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130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33
3.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34
4. 안전조치의무	134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35
6. 벌칙	137

VII. 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 개요	139
2.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140
3. 금품 등의 수수금지	143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 제한(제10조)	145
5. 청탁금지법 위반 시 제재	146
6.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절차	147

부문별 중점 속지 조항

부문	조항	Page	
전 부문 (공통)	거래거절	24	
	공정거래법	차별적 취급	26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갑질)	30
		부당지원	35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38
	하도급법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97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98
		보복조치의 금지	99
		탈법행위의 금지	100
	구매	공정거래법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32
사업활동 방해			33
하도급법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66
		부당한 특약의 금지	6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69
		부당반품 금지	78
		감액금지	79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81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86
		선급금 지급 의무	88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89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90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92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	94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9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96		

부문	조항	Page	
영업	공정거래법	경쟁사업자 배제	27
		부당한 고객유인	27
		구속조건부 거래	32
	하도급법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86
		선급금 지급 의무	88
연구소	하도급법	부당반품의 금지	78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66
		부당한 특약의 금지	68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 금지	75
		부당반품의 금지	7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69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81
		감액금지	79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66
		부당한 특약의 금지	68
품질	하도급법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74
		부당반품의 금지	78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81
		감액금지	79
		기업결합	53
재경	하도급법	감액금지	79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86
		선급금 지급 의무	88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90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95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 금지	75
		부당반품 금지	78
자재 및 생산	하도급법	감액금지	79

편람 개정 이력

구분	내용	비고
2002. 1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최초 제작 • 공정거래제도 및 CP의 이해 • 경제력집중억제 시책(계열회사간 상호출자금지 등) • 부문(재경, 영업, 구매 등)별 속지사항 및 체크포인트	
2008.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목적 : 법 개정내용 및 신규 사례 반영, 불필요 내용 삭제 •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하도급법 등 내용 추가	
2009. 0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목적 : 관련 법 개정 내용 반영 • 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0 제2항	
2012. 0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목적 : 개정사항 반영, 최신 심결례 추가 • 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0 제2항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제작 • 목적 :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점검을 통한 법 위반 예방	
2014. 0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목적 : 개정사항 반영, 최신 심결례 추가 • 내용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하도급법 실무, FAQ	
2016. 0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목적 : 개정사항 반영, 최신 심결례 추가 • 내용 : 공정거래법 실무, 하도급법 실무, 최신 심결례	
2019. 06월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최초 제작 • 목적 : 현대트랜시스 출범에 따른 편람 제작 • 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2021. 05월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개정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반영('21년 12월 30일 시행) • 하도급법 일부개정 사항 반영	
2022. 06월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개정 • 하도급법 일부개정 사항 반영(정의, 기술자료 요구 관련)	
2023. 08월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개정 • 목적 : 개정사항 반영, 최신 심결례 및 판결 추가 • 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4. 07월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사항 반영(공시, CP등급평가 인센티브 등)	
2025. 06월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개정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사항 반영(CP등급평가, 부당특약)	

주요 법 개정사항 반영 이력

개정일	개정법령	편람 반영일
2007.07.13	공정거래법 시행령(비상장사 공시 사항 관련) •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 100분의 5 이상	2009.03.16
2009.09.15	공정위 고시(선금금 지연이율 관련) • 지연이자율 연25% → 연20%	2009.03.16
2011.03.29	하도급법(중소기업간 거래 시 원사업자 요건) • 상시고용 종업원수 2배 초과기업 → 많은 기업	2011.04.06
2013.05.28	하도급법 • 부당단가인하 금지 판단기준 변경 (강화) • 감액금지 판단기준 변경 (강화) • 손해배상 범위 확대 (강화) • 중기조합 단가조정 협의 가능	2014.06.30
2013.08.13	공정거래법(특수관계자간 거래 규제 강화) • 부당성 기준 완화 : '현저히' → '상당히' • 통행세 유형 금지 : 실질적 역할 없는 거래단계 추가 • 지배주주 이익제공 금지(사익편취 규정) • 과징금 및 벌칙 추가 하도급법(부당특약 금지) • 부당특약 : 수급사업자 이익의 부당한 침해, 제한 금지	2014.06.30
2014.01.24	공정거래법(순환출자 금지) • 기업집단 현황 공시 포함 • 과징금 : 관련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하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2014.06.30
2015.07.24	하도급법 • 중견기업 대금지급 보호(연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신고포상금제 도입(부당대금결정/감액/위탁취소/반품 등) •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보호(위반시 과징금) • 조사 시효 도입(조사 착수 후 3년 초과 시 처분 금지)	2016.05.30

개정일	개정법령	편람 반영일
2017.07.19	공정거래법 •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행위 추가(조사자료 미제출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자산총액 5조 → 10조 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신설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 채무보증기업집단 폐지 • 벌칙조항 추가 : 조사방해 등 과태료조항에 벌칙으로 이동	2009.03.16
2018.01.03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기술유용 유형 추가 : 공동특허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고발 기준 • 개인 고발점수 세부 평가기준표 신설 •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 하도급법상 고발 관련 내용을 고발지침에 통합	2018.10
2018.07.17	하도급법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 확대 : 원재료 가격변동 → 공급원가 변동 • 부당경영상업행위 유형 지정 : 기술자료 수출 제한, 경영정보 요구 등 • 보복조치 금지 원인 추가 :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 확대 : 보복조치의 금지 추가	2018.10
2019.03.19	공정거래법 시행령 • 분쟁조정 신청 기관 : 분쟁조정협의회로 일원화(공정거래위원회 제외) •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절차 신설	2019.06.14
2020.12.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제11조 제2항) •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제18조 제2항, 제3항)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제25조 제2항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제31조 및 부칙 제4조) •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제40조)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제47조)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제108조)	2021.05
2022.02.18	하도급법 일부개정 • 기술자료 요건 완화, 합리적 노력 요건 삭제(제2조 제15항) •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부과(제12조의3)	2014.06.30

개정일	개정법령	편람 반영일
2022.07.24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사항 반영 • 납품대금 연동제, CP등급평가 법제화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2014.06.30
2022.12.09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자금거래 관련 안전지대 규정의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 자금거래 이외의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 신설	2023.08
2022.12.2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2023.08
2023.1.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의 공시(제8조의2 신설)	2023.08
2023.10.4	하도급법 개정사항 반영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조항 개정(제2조, 제3조 등)	2024.08
2024.1.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개정사항 반영(제33조)	2024.08
2024.4.23	공정거래법 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 • CP등급평가의 절차, 평가기준, 인센티브 관련 개정사항 반영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규정)	2025.06
2025.4.1	하도급법, 동법 시행령 및 고시 관련 개정사항 반영 • 부당특약 무효 관련 개정사항 반영(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 신설) •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 무효(시행령 제6조의4, 부당특약고시)	2025.06

0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1 CP(Compliance Program)의 개념
- 2 CP(Compliance Program)의 필요성 및 목적
- 3 CP의 8대 구성요소
-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 5 사전검토 및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보고절차
- 6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1 | CP Compliance Program의 개념

정의 및 내용

CP(Compliance Program)란?

정의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

내용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행동 규범 마련

2 | CP Compliance Program의 필요성 및 목적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 전환

CP도입은 컴플라이언스와 ESG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선도기업들이 위험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중에 있음.
또한, 공정 경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 및 운영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고, ESG 경영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실무자의 고의성이 없는 법규 위반 시, CP 운영 내역에 따라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감경, 형사 고발 등 제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기업은 자체적인 조사 및 시정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을 통해 기업 책임을 다할 수 있음

3 | CP의 8대 구성요소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CP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함. 또한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CP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3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절차를 담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디지털 플랫폼(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편람은 최신 법령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하며, 감사·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이사결정기구에 보고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

4 |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경감제도의 의의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CP등급평가 인센티브

CP등급평가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준법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수준을 평가해 CP우수기업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

- 관련법령: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CP등급은 3등급제로 AAA등급(90점 이상), AA등급(80점 이상), A등급(70점 이상)으로 구성
- CP등급평가는 3단계로 구성, ①서류평가 - ②면접평가 - ③현장평가* 순서로 진행
- *현장평가의 경우 면접평가 결과가 80점 이상 또는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 확인한 경우 시행

사전적 인센티브

CP등급(점수)	직권조사 면제 기간	적용 대상
AA(80점 이상)	1년 6개월	공정거래법(부당지원행위 제외),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관련 위반행위
AAA(90점 이상)	2년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 인센티브

구분	요건(점수)	인센티브 내용	인센티브 적용
시정조치 감경	AA등급 (80점 이상)	· 공표크기, 매체 수를 1회 한정하여 1단계 하향 · 공표기간 단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 등급 유효기간(2년) 내 1회 한 적용
	AAA등급 (90점 이상)	· 공표크기, 매체 수를 1회 한정하여 2단계 하향 · 공표기간 단축	
과징금 감경	AA등급 (80점 이상)	· 기본 감경 : 10% 이내 · 추가 감경 : 5% 이내 (CP의 효과적 운영 입증 시)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 등급 유효기간(2년) 내 1회 한 적용
	AAA등급 (90점 이상)	· 기본 감경 : 15% 이내 · 추가 감경 : 5% 이내 (CP의 효과적 운영 입증 시)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업무 담당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위반 기업 등의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5 | 사전검토 및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보고절차

공정거래법 사전검토 절차

- ①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점검 후 업무 추진
- ②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공정거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회법무팀(준법지원W/G)으로 메일 등을 통해 문의
- 법무지원시스템(계약검토·자문)을 통해 문의
- ※ 계약 관련 업무 추진 시 법무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내부감시제도 및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보고 절차

- 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감시제도로써 CP 신고 및 제보시스템 운영 중
- ② 위반행위 발견 시 보고 절차

- 법무팀(준법지원W/G)에 직접 신고/제보
- 회사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공정거래 → 「신고제보」
- 회사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
- ※ 신고/제보 시스템은 신고자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호시행



6 |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역할

자율준수관리자

1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주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총괄
- 공정거래법 위반자 제재 조치 및 자율준수 우수자(부서) 포상
- 공정거래 동향 전파를 통한 법 위반 예방 활동
- 자율준수프로그램 기획, 운영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문에 개선 요구 및 최고경영층 보고

자율준수책임자

2

-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대행
- 공정거래 관련 법률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업무 주관

자율준수전담부서

3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동향을 자율준수관리자 및 책임자에게 보고
-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규정 제정 및 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및 현업의 관련 업무 검토 요청에 대한 판단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4

- 업무추진 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사전 검토
- 본부(실) 임직원들의 법 준수 계도 및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절차 개선 노력
- 자율준수협의회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해당 본부(실)에 전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자율준수관리자 지원

1 | 경쟁법 개요

경쟁법이란

경쟁법이란?

정식명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

경쟁법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
- 기업의 모든 직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만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경쟁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 (시장 내 치열한 경쟁 →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 구매 가능 → 소비자 편익 증대)
-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지표 2가지
- ① ‘시장구조’(Market structures)
 -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수와 각 참여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나타냄
 - Ex) 독점(Monopoly) : 시장 내 사업자가 단일인 경우, 과점(oligopoly) :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분할한 경우
- ② 거래행태(business conducts)
 -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행태를 나타냄
 - Ex) 담합(Collusion) : 시장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결과 발생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① 경쟁제한제도 개선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출고 조절, 사업방해, 진입방해 등
③ 기업결합의 제한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④ 경제력집중의 억제	- 입찰담합 등
- 대기업집단지정 및 금지	③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 수 제한 등
-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2

공정거래법 실무

- 1 경쟁법 개요
- 2 불공정거래행위
-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4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 5 기업결합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한
개인 대상 제재 강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회사 임직원 등 개인 제재 강화 필요

개인 대상 원칙적 고발 기준

구분	대상자
위반 중대성	①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출 법 위반 점수 1.8점 이상이면서 ② 「고발지침」별표1.개인의 법 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산출 법 위반 점수 2.2점 이상인 자
조사방해	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명령 이행 책임성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자
탈법행위 책임성	탈법행위·보복조치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그 탈법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
핵심사항 위반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금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부당감액 금지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자
타기관 요청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을 요청한 자

관련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별표1. 개인의 법 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참작사항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시정조치 감경	0.3	지시·결재·사후승인·단독실행 등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사후보고를 받은 후 묵시적으로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지시전달·중간결재·방안마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의사를 구체화한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경우
위법성 인식정도	0.3	위법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위법행위임을 개괄적으로 인식한 경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0.3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 가담기간	0.1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관련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2 | 불공정거래행위

개념

-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당해 행위로 시장의 경쟁 정도나 경쟁사업자의 수가 줄어거나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
-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계열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특히 거래거절,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에 유의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요건

- 공정한 거래를 저해(공정거래저해성, ‘부당하게’와 의미 동일)할 우려가 있어야 함

①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가격의 상승, 생산량 축소, 경쟁참여 가능성 저하 등)
-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위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 제한효과 입증
-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판단 기준

시장 점유율	시장력(Market power) 판단
10% 이상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누적적 봉쇄효과)에 한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
20%~30%	시장집중도,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
30% 이상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② 불공정성(Unfairness)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③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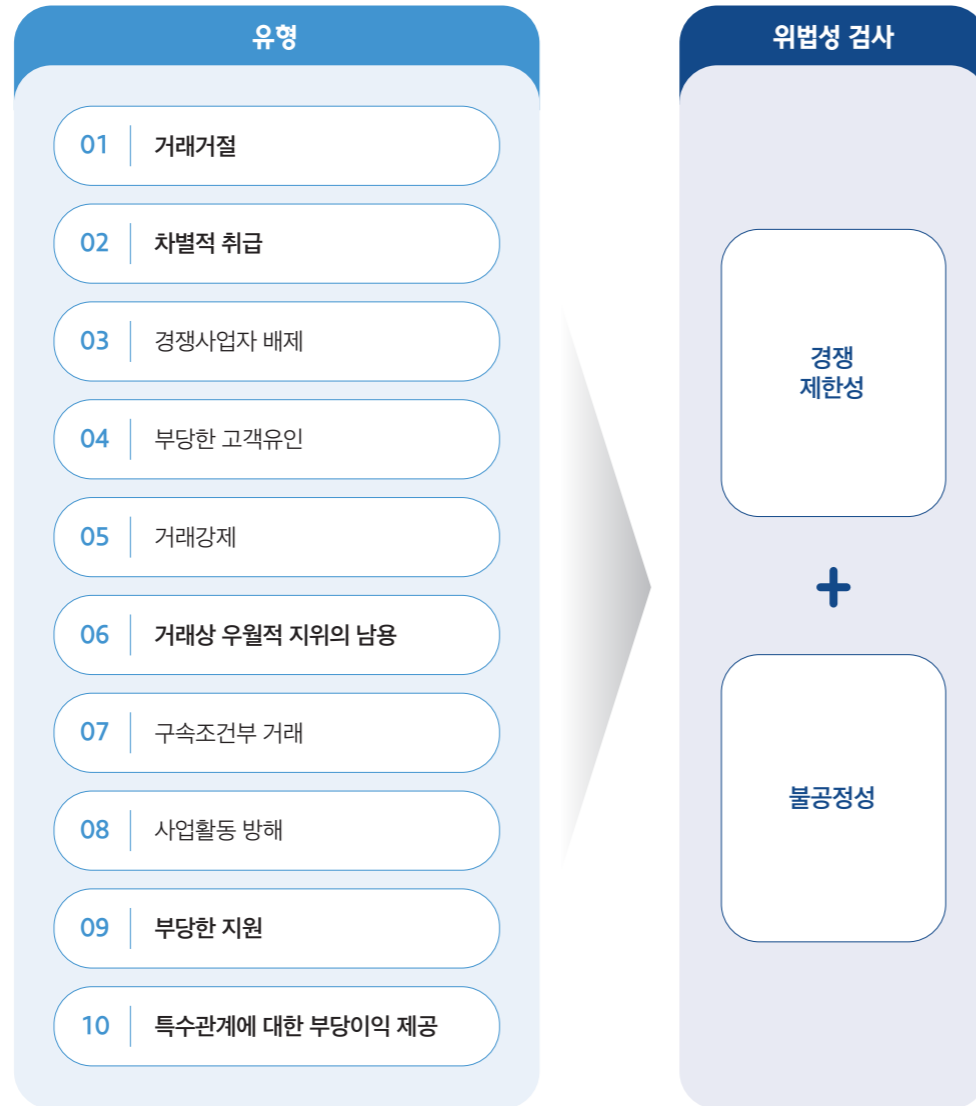
- ‘부당하게’ : 당해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으나,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이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위법,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
- ‘정당한 이유없이’ : 당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 있음

④ ‘우려’

-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재는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포함

3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개요



위반 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10억 이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125조	과징금과 벌칙 동시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40억 이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125조	*공정거래법 제128조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유형(법)	세부유형 (시행령)	법적 위법성 기준 (시행령상 입증 책임)	경제적 위법성 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	가격 차별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
	집단적 차별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제한성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하게	
거래강제	끼워팔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사원판매	부당하게	
	기타의 거래 강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구속조건부 거래	경영 간섭	-	-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기술의 부당이용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부당하게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 래 처 이 전 방 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
	부당한 인력 지원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

- ① 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거래개시 거절, 거래계속 거절
- ②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

- ①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
- ②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정당한 거래거절 사유가 있어야 함
- 상대방에게 거래거절 사유를 명확히 전달 필요
- 거래거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보고서 등) 보존 필요
- 거래중단(거래물량 축소 포함) 예상 시 상대방에게 사전예고(거래중단 6개월 전 경고성 문구 발송, 3개월 전 정식 문서 발송) 필요
-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거래거절 금지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사업자의 물품·용역 구입 의무화 금지

QnA

Q 협력업체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의 위법 여부?

A 협력업체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위법하지 않음. 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정하게 합의하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함

Q 당사의 판매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조기단산)해야 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A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기간(6개월 전 경고성 문서 발송, 3개월 전 정식 거래중단 알림 문서 발송)을 두고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거래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손해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보상해주어야 함

사례 00자동차(주)의 거래거절 행위 - 의결 95-187호

사실관계

00자동차(주)는 연료탱크를 A사로부터만 납품 받아오다가 이 회사의 노사분규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부품확보를 위해 추가로 B사를 납품처로 지정하는 한편, 동 부품의 개발의뢰서를 발송하여 초도품을 제작 및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납품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게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발주하지 않음

조치사항(시정명령)

00자동차(주)는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B사에게 부품개발을 의뢰한 후 동 개발품이 검사에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A온라인 교육회사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 행위 - 대법원2010다26035 판결

사실관계

온라인 교육업체 A가 교육프로그램 B를 개발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하면서, C에게 회원 가입유치 및 회원자격 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C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그러던 중 C가 A에게 수수료 인상지급을 요청하자, A는 C에게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세업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C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함

판결 요지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A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C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므로, A는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의료재단의 차별적 취급행위 의결 2004-091호

사실관계

○○의료재단은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상주들의 장례물품 구입처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료를 이원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조회사 또는 외부장의사로부터 장례물품을 구입하는 상주들에게 자신의 장례물품을 구입한 상주들보다 63%더 비싼 장례식장 이용료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시정명령)

피심인은 장례를 치르려는 상주들이 장의 서비스분야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조회사 및 외부 장의사를 통하여 장례물품을 구입할 경우 자기의 장례식장 이용료를 과도하게 높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대금결제조건, 품질검사기준, 인도조건,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 차별 금지
- 단,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거래조건 등을 차별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일 경우 차별 적용 가능

QnA

- Q** 기존 거래업체의 기술력이 우수하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 A** 수의계약의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계열회사와 거래 개시 전 가격, 거래조건 등을 경쟁업체의 것과 비교해야 함
- 계열회사와 거래 시 경쟁업체와 거래조건을 차별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 있음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담합과 달리 사업자 간 합의가 없더라도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 조건 차별 등의 행위 금지(ex. 계열회사 또는 협력업체와 함께 집단적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①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주)의 부당염매 행위 - 의결(약식) 제2001-031호

사실관계

○○○(주) 안산점이 약 2개월간 A음료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게 구입원가 984.5원/1.5L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390원/1.5L에서 890원/1.5L에 판매함

조치사항(시정명령)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②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단순히 시장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업자의활동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경우에 한정됨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높은 대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또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부당한 고객유인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의결 제2017-227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1.3.부터 2016.8.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해당 의사들의 명단을 국내 학회에 알려주어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으로 선전되도록 하는 등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총 381회에 걸쳐 2,032명의 의사들에게 76억 8,235만 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고발)

피심인은 자기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지원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ooo(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의결 제2021-021호

사실관계
ooo(주)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검색제휴사업자에게 키워드 등 중요 속성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고 피싱인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가 중요 속성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네이버 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

조치사항(시정명령 및 과징금)
피싱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색제휴사업자들에게 키워드 등 중요 속성정보의 변경된 내용을 알리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하며, 과징금 3억 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함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주)oooo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의결(약식) 제2010-039호

사실관계
피싱인은 □□□발전(주)이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국유부동산개발 빌딩의 시공사 △△건설(주)과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분담금(213,000천 원)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 전액면제,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 환불문제 해결 등의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건설(주)로 하여금 □□□발전(주)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인하였음. 첫째, □□□발전(주)의 시설분담금이 647,165,658원인 반면 (주)oooo는 315,469,680원으로 331,695,978원이 저렴하며 시설분담금 전액을 면제함. 이는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4억 4천만 원의 투자비가 절감됨. 둘째,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의 환불 가능여부는 당사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여 알려 줄 것이며, 현재 설계 및 착공 전이므로 시설분담금 환불여부에 대한 문제만 발생하나, 향후 □□□발전(주)과 법적 분쟁발생시 책임지고 해결함

조치사항(고발)
피싱인은 경쟁사업자가 지역난방 공급계약을 체결한 난방수요처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의 지역난방 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시설분담금 면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책임보증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하여 계약파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강제

①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자동차 제조3사의 거래강제 행위 - 의결 제2010-033호

사실관계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는 소형승용차의 하위 등급에서는 동승석 에어백을 장착하고자 할 때 안개등, 알미늄휠 등을 패키지와하여 일괄 구매하게 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3사는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위등급 차량의 기본 품목으로 장착되어 있는 내장·외장·편의장치의 품목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②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주)의 거래강제행위 - 의결 제2018-249호

사실관계
피싱인은 4년간 자사 및 계열회사인 ○○○TV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국장·임원 50부, 부장·부국장 30부, 차장·기자·PD 20부, 대리·과장 10부, 사원 5부 등 신문 구독 또는 구독 권유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를 점검 및 관리하였고, 목표 달성율을 인사평가에 차등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문 구독 목표 달성을 하도록 강제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피싱인은 자사 및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자사 상품인 신문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③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주)○○○의 거래강제행위 - 의결 제2014-176호

사실관계
(주)○○○스크린골프여성장 점주(이하 '점주'라 한다)들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함에 있어서 프로젝터를 포함한 묶음상품 형태로만 판매하는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상품구입을 강제하였음

조치사항(고발)
피싱인은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로서 점주들에게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피싱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스크린골프여성장 점주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큰 점,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피싱인이 위법성 또는 점수의 피해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법 위반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점을 인정됨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란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우월한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 성립조건 : 계속적인 거래 및 높은 매출 의존도

①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협력회사에 자신 또는 특정회사(계열회사 등) 상품·용역 구매요구 금지

사례 ○○○(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의결 제2018-129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하고 매출 실적을 관리하였음.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하였음. 피심인은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하였음

조치사항(고발)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주문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부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업체선정·물량증대 등을 이유로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 요구 금지

사례 ○○○○○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의결 제2016-316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9개 용역업체에게 ‘동부권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등 4건의 용역을 경쟁입찰로 위탁하였고 이후 피심인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 시 정한 단가산정 기준에 따른 최저금액 보다 총 564백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조치사항(과징금)

피심인은 자신의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계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증가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를 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③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불이익제공

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의결 제2020-291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이동통신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로 대리점들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해 고객의 월 수납액의 일정비율을 대리점들에게 5년에 걸쳐 관리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의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또한 이러한 관리수수료의 비율 및 결제조건 등 주요 거래조건은 피심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대리점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그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음.

피심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7,237개 대리점 중 2,633개 대리점에 대하여 총 276억 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한편 위와 같은 관리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신고인들은 2017년 3월경부터 피심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8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피심인은 2018년 9월 20일 수수료 미지급을 인정하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의원 의원실 자료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조치사항(경고)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2014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리점에게 지급해야하는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행위에 대해 경고함

⑤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1·2차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해임 시 간섭 금지
- 당사에 납품하는 목적물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모든 경영활동에 간섭 금지
 - 만약 당사에 납품하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시 및 지도 등 경영간섭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근거 필요
 - 2차 협력사의 경우는 1차 협력사를 통해 지시 및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직접 지시 및 지도할 경우 그에 대한 명백하고 합리적 근거 필요

사례 ○○자동차(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의결 제2015-346호

사실관계

피심인의 판매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는 일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피심인으로부터 판매코드를 부여받은 이후에 판매대리점 영업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계약서는 판매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영업직원이 피심인의 차량을 판매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조치사항(과징금)

피심인의 판매대리점들에게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 또는 지연함으로써 부당하게 판매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구속조건부 거래

①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계약 체결시 사전승인을 얻도록 의무화 하는 경우에도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사례 000(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의결 제2016-010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수도권 대리운전업체에게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배차서비스만 이용하면 영업비 지원명목으로 배차서비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었음. 또한 피심인은 이를 위하여 수도권 대리운전업체가 피심인의 배차서비스와 경쟁사업자의 배차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지 점검하였고, 특정 경쟁사업자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을 동시 실행하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자동배차 서비스를 제한하였음

조치사항(고발)

피심인은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게 배차서비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특정 경쟁사업자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동시 실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배차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0000000(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거래지역 제한) - 의결 제2017-016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식품대리점이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여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차액보상, 매출실적 이관, 가격 또는 할인율 조정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각종 제재를 시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조치사항(과징금)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식품대리점이 정해진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게 차액보상, 매출실적 이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활동 방해

사례 0000000 등 3개사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거래상대방 제한) - 의결 제2017-300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수립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국내 고객사들에 대하여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위반하여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한 고객사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 요구, 고어텍스 원단 공급 중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과징금)

피심인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판매를 금지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판매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
-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함은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금지

②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③ 거래처 이전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 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금지

④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무단이용, 인력의 무단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든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 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금지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사례 ○○○○○○(주) 사업활동방해행위 - 의결 제2013-142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샘물(주)와 거래 중이던 대리점들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변호사비용 50%), 물량지원(600%), 현금지원(총 5,000만 원)' 등의 영입 조건이 포함된 먹는샘물 PC제품 공급을 위한 대리점계약을 △△△샘물(주)와 거래 중이던 11개 대리점 중 8개 대리점과 체결하면서 그 추가약정서의 내용에 위의 대리점 영입조건을 반영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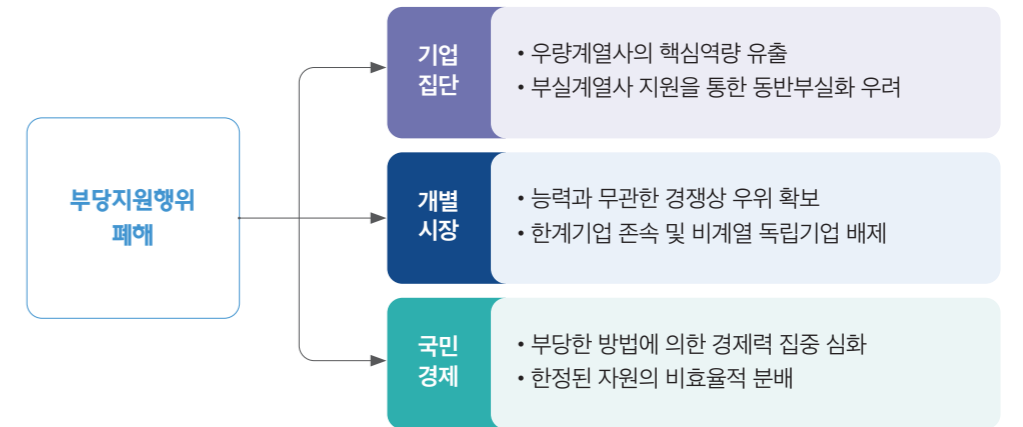
피심인은 먹는샘물 폴리카보네이트(PC)제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 거래중인 대리점에 대하여 법률비용 지원, 제품의 공급단가 할인, 제품의 무상제공, 무이자 현금대여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지원

부당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 한다.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①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자금거래에 있어서 개별정상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 금지
 - 지원객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 미만인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안전지대 규정)

사례 기업집단 ○○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 의결 제2023-124호

사실관계

피심인 ○○건설 및 계열회사들은 2013~2015년 '벌떼입찰' 방식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 2세(장남 김대현 사장, 차남) 소유의 계열사(○○건설주택, ○○산업)에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진행함. 구체적으로, ▲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약 414회에 걸쳐 무상 대납하였으며,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 양도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총 2조 6,393억 원 무상 지급보증하고, ▲2세 회사에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이관하여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사업 기회를 제공함

조치사항(과징금)

피심인 주식회사 ○○건설 및 계열회사들은 상당한 규모로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을 하거나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은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추어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② 부당한 자산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계열회사에 자산 등 임대 또는 매각 시 반드시 다른 회사와의 거래 시 적용되는 대가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하여야 함
- ※ 2022년 12월 19일 개정·시행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의하면, 기존에는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 규정을 자산·부동산·인력·상품·용역 등 각 지원행위의 유형별로 신설함.
- ※ 자산·부동산 지원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인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례 기업집단 000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 의결 제2017-174호

사실관계

기업집단 000소속 2개 회사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정상이 보다 낮게 수령하거나, △△△이 납부해야 할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 임대료 지급기한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 임대료 지연이자 미수령, 기계장치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매각하는 등 △△△를 지원하였음

조치사항(고발)

피심인들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③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인력지원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례 00000(주)의 부당지원행위 - 의결 제2018-110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소속 직원 2명을 △△△로 전적시키고 해당 직원들이 △△△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를 대신에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음 또한 피심인은 소속 직원 4명을 △△△로 파견시켰으며, 해당 직원들은 파견기간 중에 △△△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를 △△△로부터 파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급여 부분은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였음

조치사항(고발)

피심인은 △△△주식회사에 자신의 소속 인력을 전적 또는 파견하여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인건비를 자신이 부담하여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됨

④ 부당한 상품·용역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계열회사에 상품·용역 거래 시 다른 회사와 거래 시 적용되는 대가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하여야 함
- ※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미만인 경우(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안전지대 적용됨

사례 000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 결정 제2013-005호

사실관계

000기업집단은 백화점 및 마트에서 계열회사인 (주)△△의 판매수수료를 정상판매 수수료율(23%) 보다 현저히 낮은 20.5%로 적용하는 등 계열회사인 (주)△△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

조치사항(고발)

피심인들은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됨

⑤ 부당한 거래관계 추가 등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계열회사와 거래 검토 시 실질적 역할 유무 확인

사례 00000(주)의 부당지원행위 - 의결 제2018-110호

사실관계

00000(주)는 △△△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계열회사인 □□□사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하여 □□□사는 매출규모가 6배나 급증하였음. 이후 00000(주)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사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 및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을 구매할 때 □□□사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사에 상당한 매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음

조치사항(고발)

00000(주) 자신이 직접 공급사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행위 및 자신에게 공캔을 납품하는 △△△사로 하여금 공캔의 원재료 또는 △△△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부당하게 □□□사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사는 □□□사에 대하여 자신이 공급사로부터 직접 알루미늄 코일 또는 글라스락캡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⑥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안전지대'를 적용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않음
- 거래총액 기준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의 안전지대 안에 포함될 수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나 특수관계인이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예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인 경우

② 사업기회의 제공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예외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③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예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④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예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가.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 나.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시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사례 기업집단 OO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 의결 제2016-189호

사실관계 ㉠

OOOO사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인 △△사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시점에서 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이어 OOOO사는 □□□사와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전량 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을(기존 거래업체인 △△사 보다 계약기간 및 마진율 등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한편, 택배운송장 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사는 OOOO사에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납품하기 위하여 택배운송장 인쇄업체인 △△사 등과 각각 수기식 운송장을 납품받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OOOO사와 □□□사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와 □□□사와 △△사 등 인쇄 업체들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는 계약단가 및 계약기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약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였음

조치사항 ㉡ (고발)

피심인 OOOO사는 피심인 □□□사와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면서, 다른 경쟁 택배회사가 구매하는 수기식 택배운송 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열회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피심인 □□□사는 위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OOOO사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②

피심인 ☆☆☆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후지제록스와 ☆☆☆사 본사에서 사용할 복합기 62대를 입찰하기로 하는 '복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지점에도 복합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제록스 제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런데 계열회사인 □□□사는 ☆☆☆사와 제록스 간의 거래 중간에 자신을 끼워 달라고 ☆☆☆사에게 요청하였고, ☆☆☆사는 이를 수용하여 □□□사와(기존 거래업체인 △△사 보다 계약기간 및 마진율 등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록스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사는 비슷한 시기에 ☆☆☆사에게 복합기를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록스와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의 두건의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표시 및 임대차료 액수 기재 외에 모든 계약 조항이 동일함

조치사항 ② (고발)

피심인 ☆☆☆사는 피심인 □□□사와 복합기 임대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피심인 □□□사는 위와 같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사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기업집단 OO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 - 결정 제 2018-040호

사실관계

OO그룹 총수 2세 △△△이 지배 주주인 □□□사는 계속된 영업난, 자금난으로 퇴출 직전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음. 이에 OO사 재무본부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지원방안을 모색하여 OO사의 교사에 따라 ◎◎투자개발(주)는 부실회사 aa사가 거액의 전환사채를(이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신용상, 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하여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였음.

* TRS계약은 HID와 SPC(CB를 인수하는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가 정산일(계약일로부터 2년 뒤)에 발생할 손실, 이익을 상호 정산해주는 약정

◎◎투자개발(주)의 TRS 거래에 힘입어 □□□사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저리로 CB를 발행하여 거액의 자금(자본금의 7.4배)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음.

◎◎투자개발(주)의 입장에서 본 건 TRS 거래는 오로지 □□□사에게 이익만 돌아가는 구조로서 ◎◎투자개발(주)가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음. 본 건 TRS 거래는 계약 당시 모든 이익이 □□□사에게 돌아가고 ◎◎투자개발(주)는 손실만 예상되었음.

◎◎투자개발(주) 스스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외부 감사를 거쳐 감사보고서에 반영, 공시해 온 본 건 TRS 상품의 가치는 매년 부채와 손실로 평가됨. ◎◎투자개발(주)는 거액의 신용위험을 인수하여 □□□사에게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음. 본 건 지원행위로 □□□사 및 특수관계인 △△△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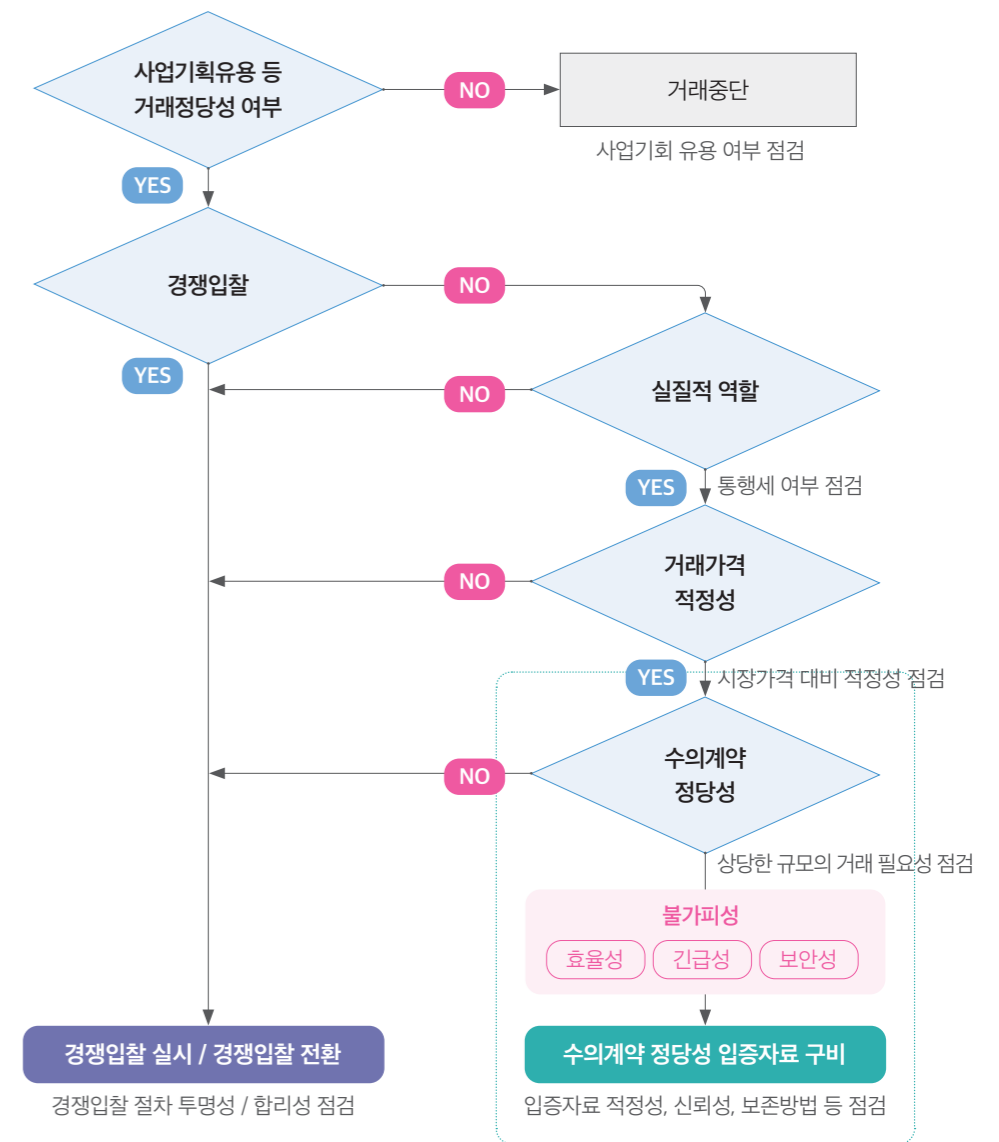
조치사항(고발)

피심인 OO사, ◎◎투자개발(주), △△△는 □□□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총수익스왑 거래(거래 상대방의 신용상, 거래상 위험을 인수하여 사실상 지급보증 등의 기능을 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명칭의 동일 여부는 불문한다)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피심인 □□□사는 위와 같이 피심인 ◎◎투자개발(주)와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또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계열회사와 거래 검토 시 법무팀과 사전 협의

계열회사(특수관계인 포함)와 거래 검토 시 거래정당성 판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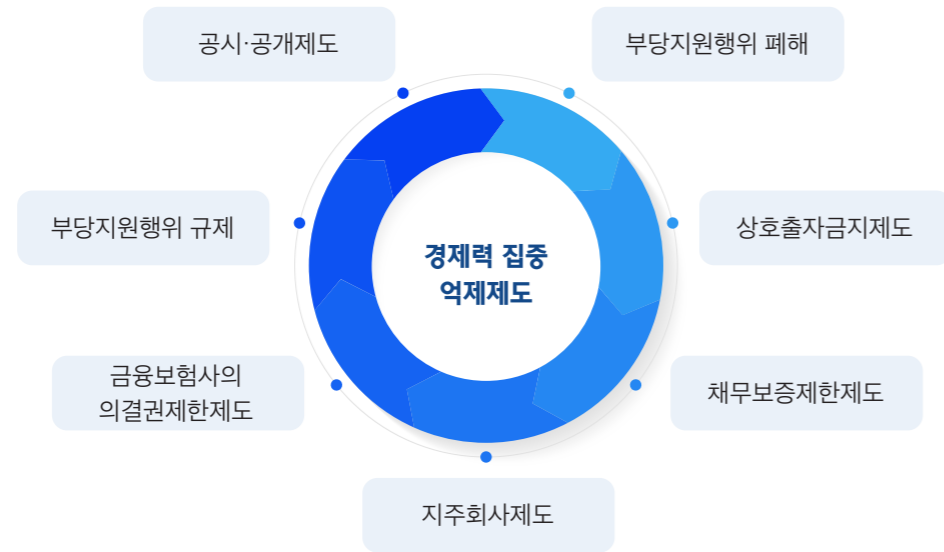


QnA

- Q 계열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정당성을 검토해야 하는지?
 A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정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거래규모, 거래구조, 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Q 비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에도 거래정당성을 검토해야 하는지?
 A 부당지원행위는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를 부당지원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거래정당성을 검토해야 함.

4 |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개요



기본개념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 ①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형태로 추진됨
- ② 대규모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의 형태별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토록 하기 위한 대상으로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임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도입배경

- ①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
 - 시장경제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이 저해 → 혁신 저해 및 소비자 후생 감소
- ②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86.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
 -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근거
 - ※ 최근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플랫폼 독과점 방지 등 경제 주체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혁신 저해 및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라는 측면에서 규제 강화 추세에 있음

공시 제도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결결 공시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6조

- ① 공시 대상회사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② 공시의무 발생시기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날(지정, 통지일)부터 적용

③ 적용대상거래

■ 대규모내부거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회사 계열회사(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를 상대로 상품, 용역을 제공 및 저해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내부거래 상대방회사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는 제외)

- ▶ *1) 자본총계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
- ▶ *2) 자본금 : 이사회 의결일 전일 기준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이를 포함함
-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하는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함

→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cp등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계열사가 인수하는 경우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비계열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를 위하 주식, cp등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내부거래에 해당함.

→ 세부적인 공시방법은 상대방란에 거래 상대방란에는 거래를 증명한 비계열 금융회사를 기재하고 거래내역란 중 채권(또는 CP등)의 발행자란에 계열사를 기재하면 됨.

■ 대규모내부거래 유형

- (A)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음.
- (B) 유가증권 거래
 -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 (C)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 * 자금 및 유가증권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의미함
 -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거래, 영업권/특허권의 양도 및 양수 등
- (D) 상품·용역 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회사 계열회사 및 동일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상대로 상품, 용역을 제공 및 거래하는 행위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하여 일괄할 수 있음

④ 공시시기 및 절차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내에,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각각 공시해야 함
-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함

⑤ 공시내용 및 서식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 방식(상품·용역거래에 한함),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⑥ 주요내용의 변경

-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의 변경은 아래와 같다.
 - ▶ 거래목적 또는 거래상대방의 변경
 - ▶ 거래상대방의 변경(다만, 상호변경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거래상대방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함)
 - ▶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⑦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시대상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해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증권용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 계열 금융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의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 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 공시
-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인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
①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인수	①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 등 특정조건을 부기한 거래
② 채권(회사채, CP등)을 증권사가 계열사와 매매	②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등
③ CP중계, 인수, 할인 등의 매매행위	금융·보험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가 아닌 경우
④ 단기금융상품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	③ 계열사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⑤ 초단기 금융상품(MMT 등)을 계열 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⑥ 계열 생보사에 종퇴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⑦ 콜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한 경우	
⑧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⑧ 상품 또는 영역의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상품 또는 영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 상품 또는 영역의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영역의 거래가 분기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 금액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⑨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 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단,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⑩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는 행위
- 대규모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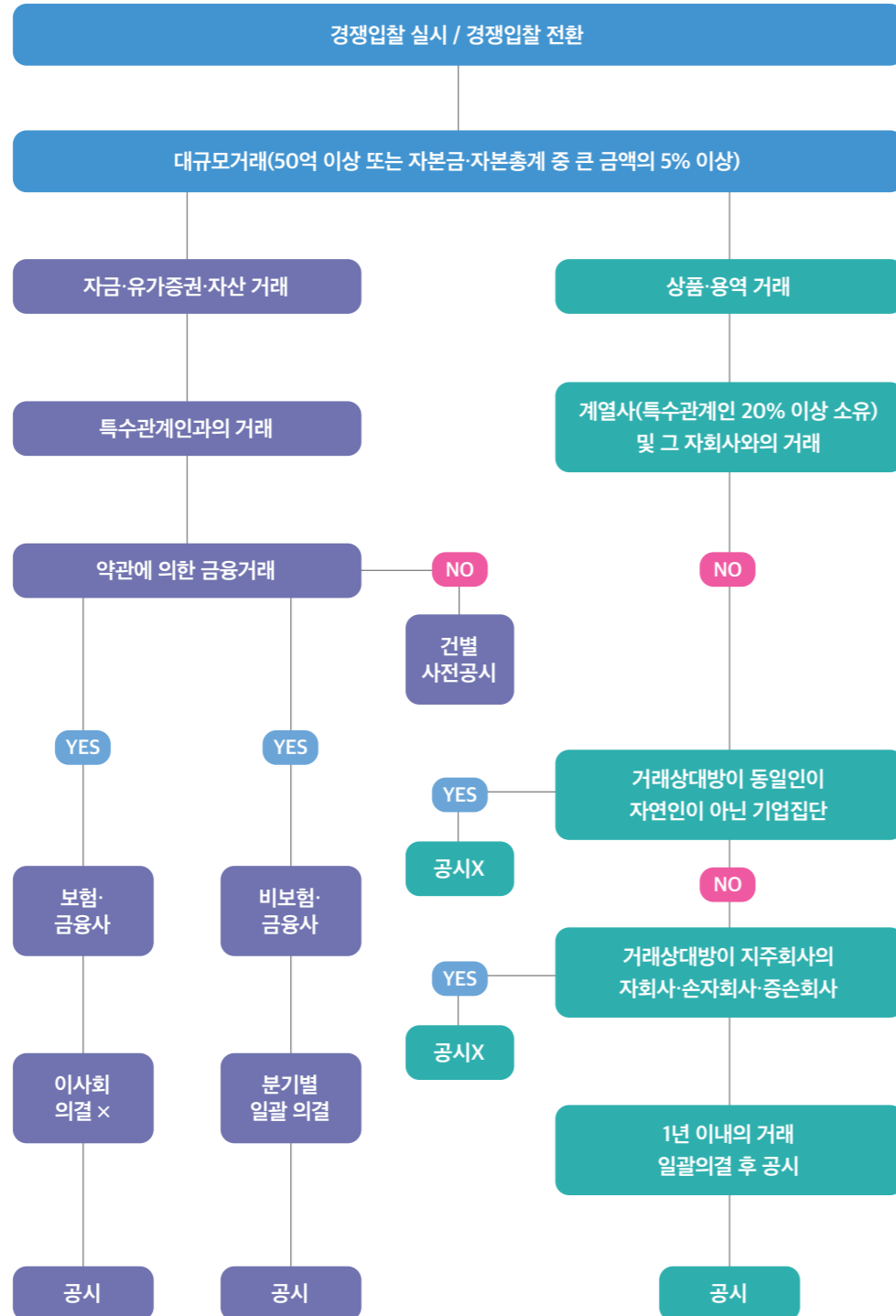
⑪ 전자문서 제출방법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표준서식 준용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납입자본금 변동현황 확인
- 계열사편입일자(공정위로부터 계열편입 통지일 또는 승인일) 확인
-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자동연장조항 관련하여 재계약 여부 확인
- 부동산 임대차, 사용시작 시점과 공시 여부 확인(상장, 코스닥 등록 여부 확인)
- 장내 주식거래인 경우, 매도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공시의무 미발생
- 상품 및 영역거래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주거래에 수반된 종된 거래로 보아 공시 의무 미발생
-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 경우, 전환행위는 주된 거래에 수반된 종된 거래로 공시의무 미발생
- 조기에 상환하는 행위는 공시의무 미발생
-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시, 증자하는 회사와 참여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공시대상요건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공시여부 확인(주금납입일 기준이 아님)
- 공시대상 거래여부 판단 시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제외
-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거래상대방, 거래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행위로 보아 공시여부 판단
- 소급의결, 사후의결의 경우 자료 확보 후 협의하여 결정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한눈에 보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도입배경

-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고지 의무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음
- ※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도입('05.4.1.)

법적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의 범위,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 사항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공시대상 회사, 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시시기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주요용어 설명

- 자기자본 산정
 -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함
 - 단,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실의 효력발생일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을 말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자산총액, 자기자본 기준의 적용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
 - 즉, 2019. 12. 31일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른 자산총액과 자기자본은 2020. 4. 1.부터 2021. 3. 31. 까지 발생하는 중요사항 변동에 대하여 공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
- 자본잠식 회사의 자기자본
 -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봄

적용대상 회사

- 적용대상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국내)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면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이하 '비상장회사'라 한다)
 - 다만,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는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시대상에 해당
 - 금융·보험사는 비상장회사 공시제도의 적용을 제외

- 연도 중 편입·제외된 경우
 - 공시의무 발생은 계열 편입·제외통지일 기준
 - 연도 중에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지정제외된 날부터 공시 의무가 해제

공시유의사항

- 공시양식
 -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표준서식을 준용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의 공시양식*은 현재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고 있는 양식을 준용
 - * 공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령상의 공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과 동일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에 관한 공시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자본시장 법령상의 관련규정 해석과 다를 수 있음*
 - * 예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에서 “최대주주”는 공정거래법령상의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본시장법령상의 “최대주주” 개념과 다름
-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른 공시 사항은 제외
 - * 공시양식이 내부거래공시와 동일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로 같음하고, 기타 란에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표시
 - 두 공시 간의 양식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를 하면서 내부거래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 기재할 수 있음

- 공시기한
 - 공시사항은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초일불산입)에 공시하여야 함
 - * 단,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 임원변동현황 공시는 분기 공시(등기일 속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 * 예시) 사유발생일: 1월 1일(월) / 공시기한: 1월 8일(월)
 - 전자공시시스템 상 전자문서 제출가능 시간은 07:30 ~ 19:00이나, 18:00 이후 제출 시 다음 업무일에 공시처리됨
 - 공시사유발생일은 다음을 의미
 - * ①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보유주식 등의 변동이 있을 때,
 - ② 임원의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한 날,
 - ③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공시사항
 - 1)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현황
 -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①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결정사항
 - ② 다른 법인(국내·외 계열회사를 제외한 국내·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결정사항
 - ③ 증여 또는 수증,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 제외) 결정사항
 - ④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결정사항, 증자·감자 결정사항,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결정사항
 -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①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②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③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④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⑤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및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⑥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사항
 - ⑦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⑧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결정사항
 -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해제 결정사항

사례 0000유리(주)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행위 - 의결 제2009-012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0000(주)를 흡수합병하면서, 2008. 1. 17. 계열회사인 000텍(주)와 0000코리아(주)의 주식을 0000(주)의 소유에서 피심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함으로써 그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각각 51.0%, 5.2%로 변동되었다.

·피심인은 이와 같이 계열회사에서 보유주식비율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8. 1. 24.까지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사항(시정명령)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로서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법정 공시기한(사유발생일 변동일로부터 7일) 내에 그 변동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2008. 1. 17.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피심인의 소유로 각각 명의변경함으로써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시기한까지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과태료(10,000천 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도입배경

- 사전적 규제로서의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기업집단 출자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 (2009.7.8 시행)
-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을 제고

예외사항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성실이행 등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개별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 공시하여야 함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해야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제외 내역
 - 개별회사의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공시사항

- **일반현황**
 -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 **임원 및 이사회 현황**
 -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 이사회 및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주식소유현황**
 -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 이사회 및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 특수관계인과 자금차입 및 대여현황, 유가증권 매입 및 매도 현황, 상품용역 거래 현황 및 세부내역, 자산 매입 및 매도 현황, 채권·채무 잔액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현황
 - ※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공시 대상 기준
 -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아래 1) 또는 2)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내역
 - 1) 사업기간 매출액의 5% 이상
 - 2) 50억 원 이상
- **순환출자현황**
 -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 내역 등
- **특수관계인 및 친족 출자회사 거래현황**
 - 특수관계인 및 그 친족 지분율이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계열회사와의 거래

공시시기

- 원칙 : 분기별 공시(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기업의 정보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또는 2회 공시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과태료 : (미공시) 1,000만 원 / (오공시) 100만 원 ~ 500만 원 / (지연공시) 100만 원 ~ 1,000만 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기타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상호출자 금지 / 신규순환출자 금지

① 개념

- 상호출자금지(공정거래법 제2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규제 필요성

- 자본총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
- 순환출자를 활용해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괴리
- 총수일가의 부당한 보상 추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저해, 기업집단 전체로의 부실 전이 발생

③ 적용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④ 규제 사항

- 상호출자 금지 :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주식 취득 또는 소유 금지
- 신규순환출자 금지 :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및 상출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
 - ※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 5가지
 1.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 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 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 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 * 신규 순환출자 예외사유 5가지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22조 제2항 1호~3호)

채무보증제한제도

① 채무보증의 개념

- 채무보증이란 충분히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 때에 신용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

② 적용 대상

- 「상출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 회사는 제외)

③ 주요 내용

-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 ※ 채무보증제한 예외 : 산업합리화, 국제 경쟁력 강화 와 관련된 채무 보증

④ 필요성

- 금융기관의 중복, 과다보증을 제한하고 계열회사 상호간 빚보증을 통한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계열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금융자원이 기업집단의 힘이 아닌 효율성에 의해 배분되게 함으로써 자금이용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채무보증을 통한 퇴출장벽을 완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주요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국내 총생산액의 5/1000 이상인)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
- ※ 예외(의결권 행사를 인정)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 2)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예외(의결권 행사를 인정)
-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
- 2) 해당 국내계열회사(상장법인 한정)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

② 필요성

- 대규모기업집단(산업자본)이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그 금융회사는 고객자금을 통해 다시 비금융계열(산업자본)로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과 경제력집중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운영

지주회사

① 개념

-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 1)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 2)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이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② 주요 내용

-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단계 및 지분을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

5 |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유형

① 결합회사간 관계에 따른 분류

- 수평형 기업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수직형 기업결합 : 원재료의 생산이나 상품·용역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혼합형 기업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②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 분류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 기업결합으로부터 주식소유, 임원겸임, 회사설립참여 등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대규모회사가 아닌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 회사를 결합한 경우
- 취득회사가 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위로부터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에 회사간 결합

기업결합의 수단

① 주식취득	② 임원 겸임	③ 합병	④ 영업의 양수	⑤ 새로운 회사의 설립
-----------	------------	---------	-------------	-----------------

신고대상 회사

① 신고대상 회사

- **취득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 **피취득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백억 원 이상
- **자산총액** :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의미.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함

신고대상 행위

구분	내용
주식소유	다른 회사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20%(비상장법인) 또는 15%(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이상 취득 시
최대출자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2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가 되는 경우
임원 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계열회사 임원 겸임 제외)
합병·영업양수	다른 회사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양수·임차, 경영의 수입, 영업용 고장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모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는 제외)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가 되는 경우

※ 신고 면제 대상

- ① (PEF 설립)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는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를 면제
- ② (모회사간 M&A)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 및 영업 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모회사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 ③ (1/3 미만 임원 겸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④ (계열사간 합병 시 피합병회사) 계열사간 합병 시 계열사 규모 중복합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합병회사는 규모 합산 없이 자체 규모만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하며,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신고가 면제됨

신고시기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등 이후부터 ~ 기업결합일 이전까지
		합병	
		영업양수	
사후 신고	대규모 회사	회사신설 참여	회사신설에 대한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까지
		임원겸임	겸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희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목적

①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
-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

②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 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㉔, ㉕항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함

㉔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

-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
-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배관계가 형성
-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

㉕ 임원의 겸임인 경우

-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

㉖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 참여회사 중 2개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함

■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㉗ 거래대상(상품시장)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함(상품의 기능·효용, 가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㉘ 거래지역(지역시장)

-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체제를 말함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기업결합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함

㉔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

◎ 수평적 기업결합인 경우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이하 HHI라 함)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㉕ 수평적 기업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단독효과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랑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 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구매력 증대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를 고려

㉖ 수직형 기업결합(생산, 판매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회사간 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㉗ 혼합형 기업결합(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경쟁사업자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 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 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㉘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 후 당사 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㉙ 신규진입의 가능성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또는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㉚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㉔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

■ 효율성 증대효과 및 희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㉕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함.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것
 - ▲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음
 - ▲ 당해 결합이 없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㉖ 희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함
- 희생이 불가한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지
 - ▲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 그 기간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
 -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이 있는 회사인지
 - ▲ 당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당해 회사와 경영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희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함
 - ▲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지
 - ▲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 그 기간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
 -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여부
 - ▲ 당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희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함
 - ▲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산설비 등을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이 어려운 경우
 -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사례 (주)OOO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행위 - 의결 제2015-060호

사실관계

본 기업결합은 △△△그룹 계열회사들이 가까운 미래에 피심인 (주)OOO이 생산 예정인 Wire rod를 원재료로 하여 CHQ Wire 및 CD Bar를 생산하는 피심인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피심인 (주)OOO이 소속된 △△△그룹의 계열회사는 CHQ Wire 및 CD Bar의 최종 수요처가 되므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인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함

조치사항(시정조치)

이 사건 기업결합은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으로 인한 경쟁제한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CHQ Wire 및 CD Bar를 구매하는 파스너 및 샤프트 제조사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경쟁사업자 기밀정보의 결합당사회사 간 제공 금지,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이행감사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함

03

하도급법 실무

- 1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 3 발주자의 의무사항

1 |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하도급법의 목적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하도급법의 성격

공법, 경제법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개입하는 공법이자 경제법

민사특별법

-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사적 계약관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민사상 특별법
-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는 민사상 또는 상법상의 이자율보다 우선(대법원 판례 2010. 10. 28. 2010두16561)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

-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
- 하도급법 제34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산업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름

속지주의 원칙 적용

-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업자간 국내에서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공사현장 또는 공장 소재지, 생산지 등이 해외소재 여부는 무관)

양벌규정

-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과징금 및 대표이사 고발)을 처벌함과 동시에 법 위반 행위자(과태료 및 벌금 등)도 처벌

강행규정

-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등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
-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 위법

사용자 책임

- 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곧 당해 회사의 행위로 간주
-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되어 행한 행위는 회사의 책임

하도급거래의 당사승계 : 포괄승계의 책임

- 수급사업자가 전 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
-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하도급거래에 따른 자로 봄

하도급의 경제적 의미

- 제품 생산과정(건설 및 용역 포함)에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공정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고 중간공정, 중간재, 용역을 납품(제공) 받는 분업생산방식
- 중간재 조달방식으로 순수 시장구매와 기업내부생산의 중간형태
- 각 공정을 분담하여 기업간에 생산을 특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축적효과 증대가능(분업의 원리)

하도급과 제조위탁의 정의

①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당사와 하도급거래 유형 : 제조위탁

하도급거래 범위



②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제조
- 물품의 판매
- 물품의 수리
- 건설

제조위탁의 유형

① 유형 I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
 -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

② 유형 II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③ 유형 III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해당

■ 당사의 하도급법 적용 대상 수급사업자(중소기업)

- 규모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 ※ 단,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이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함
- 유형 :
 - 파워트레인 및 시트 부품, 금형(시작품 포함), 제조업체
 - 조립, 검사, 임가공 업체
 - 판매물품의 부속품 : 포장재 제조업체

■ 당사가 유의해야 할 중견기업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적용)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 대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② 법 적용 기간(하도급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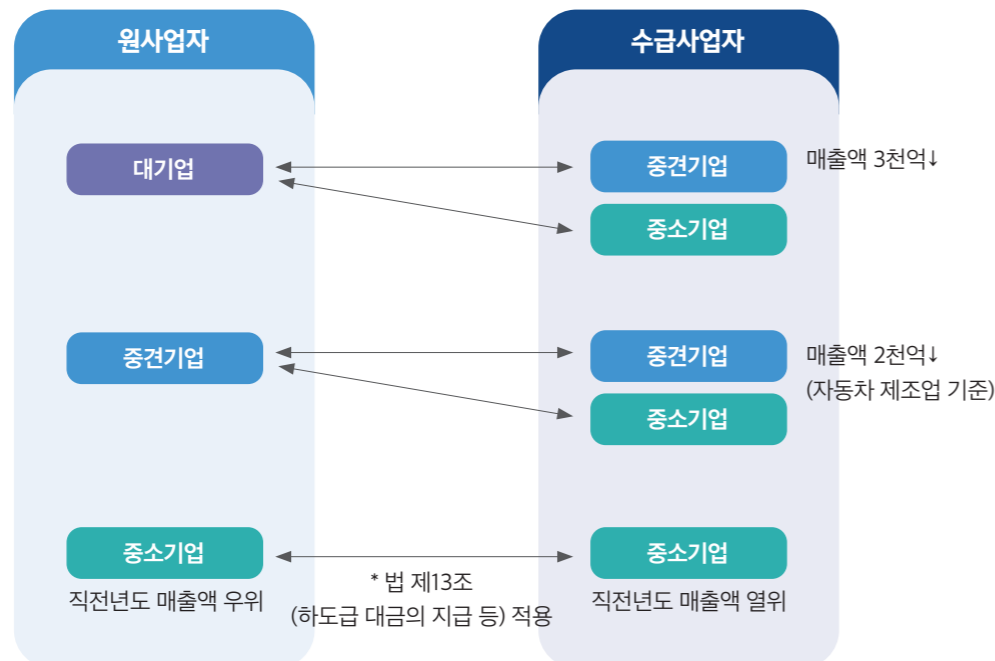
- 당해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가능
- 다만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거래가 끝날 날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조사 개시가 가능함 ※거래종료일 = 최종 납품 완료일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법 적용 조항>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제2항)
·제24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1항)
·제24조의5 조정 등(제6항)
·제25조의3 과징금(제1항)

적용대상

① 사업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하도급거래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다.

**손해배상 책임
(법 제35조)**

■ 일반 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징벌적(3배) 손해배상 제도 확대 (18.01.16 개정)

· 원사업자가 아래의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②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③ 부당반품의 금지
- ④ 감액금지
-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⑥ 보복조치의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법 제22조 제5항)**

아래의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②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③ 부당반품의 금지
- ④ 감액금지
-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⑥ 보복조치의 금지



2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거래단계별
준수사항**

거래단계	의무사항(8개 조항)	금지사항(13개 조항)
계약체결단계	· 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3조)	· 부당한 특약의 금지(제3조의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계약이행단계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제9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8조) · 부당반품의 금지(제10조) · 감액금지(제11조)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제12조의3)
대금지급단계	· 하도급대금의 지급(제13조) · 선급금 지급 의무(제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16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16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제17조)
기타	·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제7조) ·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제15조)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2)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18조) ·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 탈법행위의 금지(제20조)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부당하도급거래 납품대금연동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경영간섭, 탈법행위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1.5억 원 이하의 벌금	동시적용 가능
보복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3억 원 이하 벌금	

계약체결 단계

①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의 의무(법 제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양사가 기명날인(전자서명 포함) 하여야 한다

■ 서면발급 법정 기재사항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사급)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등
- 6)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연동 대상 목적물의 주요 원재료, ▲하도급대금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등

■ 서면의 발급 시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서면의 발급의 특례

- 1)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이 정해지는 예정 기일을 기재해야 한다.
- 2) 위 1)의 경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대에 지체 없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서류 보존(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 의무)

- 1) 제조 등의 위탁 시 발급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
- 2) 목적물 수령증명서
- 3)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이 기재된 서면
- 4)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면
- 5)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관세 등의 환급액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기재한 서면
- 6) 사급(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의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를 기재한 서면
- 7)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 8) 기술자료요구서
- 9)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한 금액과 사유를 기재한 서면
- 10) 공급원가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내용, 협의내용, 조정금액, 조정 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
- 11)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면

■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추정하는 제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계약 체결, 단가조정, 납품/반품 등 수급사업자와 협의, 확정하는 모든 사항은 서면 교부 필요
- 구두발주 금지
- 수급사업자가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 요청 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회신
- 하도급거래 서면은 3년간 보관, 기술자료 관련 서면은 7년 보관

QnA

Q 적법한 계약서 교부 시점은

A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

Q 신규업체에 부품개발 의뢰 시에도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A 부품개발 행위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업자의 부품개발 작업 시작 전까지 계약서 교부 필요

Q 구두발주는 무조건 위법인지

A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정당한 사유(긴급/천재지변 등 원사업자가 입증)로 인해 구두로 발주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서를 교부해야 함

Q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은?

A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이견 또는 추가 요구사항 등이 있어 날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지시(부품개발 및 생산) 금지

사례 (주)000의 서면 미교부 행위 - 의결(약식) 제2017-026호

사실관계

(주)000은 △△구축 개발과 관련하여 A사와 업무범위 및 계약금액 등 계약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A사는 해당 용역 수행에 착수하였음. (주)000은 용역착수 전까지 하도급 표준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용역 착수 후 발급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피심인은 장례를 치르려는 상주들이 장의 서비스분야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조회사 및 외부 장의사를 통하여 장례물품을 구입할 경우 자기의 장례식장 이용료를 과도하게 높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주)△△△의 서면 미교부 행위 - 의결(약식) 제2017-274호

사실관계

(주)△△△는 포장박스를 제조위탁하면서 '13년~'14년 발주물량에 대해 서면발급 없이 구두로 발주하였고, '15년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쌍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고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항목이 누락된 발주서를 교부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및 과징금)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②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당특약의 유형(부당특약 고시)

-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 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다음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클레임에 대한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경우 원사업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약정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포장/검사/품질/운송 등 계약조건 외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반드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수급사업자와 계약서 등 일반적인 약정 이외의 사안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할 경우 반드시 법무팀과 협의해야 함

사례 (주)OOO시스템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 의결 제2015-326호

사실관계

(주)OOO시스템은 4개월간 31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조건에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을 못할 경우 수급완료 후 동일조건으로 지급, ② 수급사업자의 고용원 등의 재해와 사업시행과 정 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짐, ③ 검수를 위한 제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등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함

조치사항(과징금)

(주)OOO시스템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의 조항을 지체없이 삭제 또는 수정하고 동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함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법 제4조) ⇨ 징벌적(3배) 손해배상 및 원칙적 고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하게'의 위법성 판단기준

- 1) 그 내용, 수단·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하지 여부
- 2)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 4)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낮은 수준'의 판단기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1)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
- 2)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
 -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이 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 3)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와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의 판단기준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정당한 사유 예시

- ㄱ)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ㄴ)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ㄷ)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 일률적인 비율의 예시

- ㄱ)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적물 등에 대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ㄷ)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 법 위반 예시

- ㄱ)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ㄴ)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ㄷ)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 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 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ㄹ)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ㅂ)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ㅅ)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
-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
 -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낮은 단가” 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정당한 사유 예시

- ㄱ)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
- 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영 제7조 제1항)

-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
 -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ㄱ)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클레임에 대한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경우 원사업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약정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포장/검사/품질/운송 등 계약조건 외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반드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수급사업자와 계약서 등 일반적인 약정 이외의 사안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할 경우 반드시 법무팀과 협의해야 함

QnA

- Q**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하도급단가를 재결정할 때 양사가 합의하여 단가를 인하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 A**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단가를 재협상하는 것 자체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의 하도급단가보다 인하는 행위는 위법함
- Q** 원사업자의 가격결정표준에 의해 단가가 결정될 때 이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
- A** 원사업자의 가격결정표준에 의해 양사가 지속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왔다면 수급사업자도 관행으로 인정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나, 원사업자의 가격결정표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함

사례 OO정공(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의결 제2016-359호

사실관계
OO정공(주)는 발주자와 기종별 제작단가를 평균 2.7%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 OO정공(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매기본계약 변경 요청의 건’(제작단가 평균 12.8%인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2일 이내에 회신을 요청함. 이를 통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

조치사항(과징금, 시정명령)
OO정공(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의결 제2012-188호

사실관계
□□□(주)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기 위해 심의입찰을 실시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낙찰가를 결정하였고 또한 양산가 결정 시 추가인하를 통해 낙찰가보다 낮은 양산가를 결정함

조치사항(과징금, 시정명령)
OO정공(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및 단가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계약이행 단계

①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법 제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검사비용 부담 주체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 대량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1) 대량납품하는 경우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가 일반적인
- 2) 납품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3) 단, 계약서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등)이 명백히 있고 반품의 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함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1) 검사의 방법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 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합격 등이 있음
- 2) 검사결과와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예시)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함
 - 거대 건설공사(댐, 교량, 플랜트),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검사기준 설정 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정해야 함
- 검사결과 지연 통보 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 필요
- 합의된 검사기준 이외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 금지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유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QnA

- Q**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품의 경우 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 반품가능 여부?
A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위법하나, 사전에 검사기간 내에 불량을 판별할 수 없는 합리적 근거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서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 Q** 최초 계약 시 정한 검사기준이 강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검사장비 구입, 포장재 및 포장방식의 변경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어야 하는가?
A 반드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함. 검사기준 강화는 원사업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단가인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Q** 완성품 제조과정에서 납품 받은 부품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 요구 시 위법 여부?
A 부품을 납품받은 후 10일 이내일 경우 수리 및 교환 요구 가능, 부품을 납품받은 후 10일을 경과했을 경우 수리 또는 교환 요구 시 위법하나 사전에 해당 부품의 검사기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쌍방이 서면을 통해 합의한 경우 그 합의한 기일까지 교환 및 수리 요구가 가능함
- Q** 완성품 제조과정에서 납품 받은 부품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불량 부품으로 인해 생산라인 중단 등 원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보상 요구 시 위법 여부?
A 부품불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 여부에 대해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을 서면을 통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 보상 요구 가능
- Q** 완제품 출하 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의 원인으로 인해 불량완제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완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에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100% 전가할 경우 위법 여부?
A 수급사업자의 불량부품이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제작되었고 품질 검사 기간에 합격하였으므로 해당 책임을 100%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 이러한 경우를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분담률을 정하여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음

② 부당한 위탁취소(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등(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2)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점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위탁(발주)취소의 위법성 판단 기준

- 1)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이하 '취소'라 한다)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옹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수령거부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1)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이하 "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이하 "거부"라 한다)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근거 필요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사유가 원사업자에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QnA

- Q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기발주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위법 여부?
A 부도는 향후 거래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거래종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미 제조를 완료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위법함
- Q 납기 전에 납품된 목적물의 수령거부 시 위법 여부?
A 납기 전에 납품된 목적물은 수령할 의의 없어 수령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음. 만약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경우 보관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망실 또는 목적물의 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Q 발주자의 위탁취소로 인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취소할 경우 위법 여부?
A 발주자의 위탁취소 사유가 정당할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손해는 발주자의 보전 여부에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보전해주어야 함.

사례 (주)△△△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 의결 제2016-187호

사실관계

(주)△△△는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음.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제품 생산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납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함
-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제품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납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점이 인정됨

조치사항(시정명령)

(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주)OO이노베이션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행위 - 의결 제2022-240호

사실관계

(주)OO이노베이션은 다른 부품 거래처의 납품지연, 고객사의 사정 등으로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위탁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2020. 6. 9. 검수를 받지 않으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실제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아니함.

조치사항(시정명령)

(주)OO이노베이션은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③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징벌적(3배) 손해배상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반품의 위법성 판단 기준

- 1)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금지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하여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 후 반품 금지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사급재)의 불량을 원인으로 목적물 불합격 처리 후 반품 금지
-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사급재)의 공급지연으로 인해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반품 금지
-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한 반품 금지
 - 쌍방이 사전 협의를 통해 검사기간 및 검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합의된 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되었을 경우 수령 후에도 반품 가능

QnA

Q 샘플검사를 통해 합격처리 되었으나 이후의 공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품을

A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수령 후 반품은 위법하나, 쌍방이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검사 기준, 검사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보관하고 그 내용에 따라 반품할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Q 수급사업자가 발주물량(파일럿 부품 포함) 이상으로 납품하고 원사업자가 수령 및 사용 후 잔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품이 가능한가?

A 반품이 불가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납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입고한 행위는 정상적인 수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품하는 경우는 부당반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납이 발생할 경우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례 (주)OO의 부당반품 행위 - 의결(약식) 제 2016-052호

사실관계

(주)OO은 수급사업자에게 여성용 의류제조를 구두로 위탁하였고, 이후 이를 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잘 팔리지 않는 바지이니 가을쯤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반품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주)OO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한 목적물을 납품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주)OO의 부당반품 행위 - 의결(약식) 제2016-014호

사실관계

(주)OO은 수급사업자에게 증장비에 사용하는 유압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납품하였음. 발주자는 해당 목적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 불량 발생함. 원사업자는 불량 발생의 귀책이 발주자에 있음에도 해당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처리하고 이를 납품대금에서 감액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주)OO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가공과정에서 발생시킨 불량(가공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행위 및 이러한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④ 감액금지(법 제11조) → 징벌적(3배) 손해배상 및 원칙적 고발 대상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감액의 위법성 판단 기준

- 1) 감액의 '정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2)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

■ 감액서면 발급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 감액서면 필수 기재사항

-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3) 감액 금액
- 4) 공제 등 감액 방법
-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 1)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2)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부당한 사유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여 자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폭우로 인해 유실될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 2) 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4)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5) 구두로 납기 등을 연기한 후 당초 서면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감액하는 행위
- 6)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7)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 9) 당초 계약과 달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10)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제화폐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화폐로 변경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지우는 행위
- 11) 단가와 수량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후에 수량을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단가인상 등의 보전을 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 12)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 13) 하도급거래 기간 중에 당초 계약 시 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이나 기타 부대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1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15)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 16)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 공사분을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에서 잔여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 17) 원사업자가 철근 등 지급자재의 가공·보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제3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토록 하면서, 자재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재비 손실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QnA

- Q 원사업자가 단가변동 시기를 지연하여 단가를 인상하는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A 원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단가인하 소급적용은 위법함. 변경된 단가는 쌍방의 가격합의 날인일부터 적용이 가능함
- Q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 후 감액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A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조건은 위법함
- Q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감액할 경우 위법 여부**

A 감액조건을 명시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조건은 위법함

사례 ㈜000의 부당한 감액 행위 - 결정 제2017-039호

사실관계
 ㈜000은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총 2,692건에 해당하는 66,734,470원의 클레임 비용 변제를 요구받았음. 이에 피심인은 총 2,692건은 중 2,309건의 클레임의 경우 피심인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000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는 위반금액이 각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 해당하는 점, 위반기간이 장기이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가 45개로 다수인 점 등에서 파급효과가 큰 점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함

사례 ㈜■■■■의 부당한 감액 행위 - 의결 제20180-225호

사실관계
 ㈜■■■■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동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가격인하 협의록 등에 인화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하고, 실제로 합의일 이전에 납품되어 입고된 총 1,318개 품목에 대하여 인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조치사항(시정조치, 과징금)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화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00의 부당한 감액 행위 - 의결 제2023-036호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 ㈜00은 2016. 5. 1.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음. ㈜00은 수급사업자와 2019. 2. 27.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합의함. 그리고 합의 성립 이전 기간에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도 인화된 단가를 적용함.

조치사항(시정조치, 과징금)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부품 제조위탁에 따른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화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금지(법 제12조의3)

→ 징벌적(3배) 손해배상 및 '유용행위' 시 원칙적 고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 용어의 정의

1) 기술자료란?

-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정보 또는 자료
 -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 및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위에 열거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 및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비밀로 관리'한도의 의미

-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 ㄱ)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 ㄴ)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명령한 경우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 ㄱ)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 ㄴ)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ㄱ)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
 - ㄴ)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3) 정보 및 자료의 의미

-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함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4)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의 의미

- 정보, 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ㄱ) 현재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 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 ㄷ)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 ㄹ)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고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 위법성 판단 기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경우
 -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의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됨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기술자료요구서)로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 서면 기재사항
 - ㄱ)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 ㄴ)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ㄷ)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ㄹ)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ㅁ)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ㅂ)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기술자료 유용

-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예시 10]**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 [예시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기술자료제공 요구서)을 교부
 - 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요구목적 이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회사 내 타부문 포함) 및 유용 금지
 -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철저한 비밀유지
 -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반환일(폐기일) 준수

QnA

- Q** 수급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가 필요한지?
- A** 필요하지 않음. 다만 해당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근거(이메일) 등 확보가 필요함. 근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해당자료는 삭제
- Q**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요구서에 동의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법 여부?
- A** 수급사업자의 동의(승인)이 없는 기술자료요구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서면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동의(승인)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 Q**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요구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회사 내 타 부문 포함)에 제공할 경우 위법 여부?
- A** 기술자료제공요구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음

사례 000코리아(주)의 부당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행위 - 의결(약식) 제2017-062호

사실관계
 000코리아 (주)SMS 3년동안 A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 장비에 장착할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총 5건의 제공을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교부하지 않음

조치사항(시정명령)
 해당 금형도면은 기존의 금형과 신규 금형이 일치하는지 변경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사유에 해당하나, 법정 기재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형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000주식회사의 부당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행위 - 의결(약식) 제2017-064호

사실관계
 000주식회사는 3년동안 A사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FA)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 장치(부품)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로봇과 그 주변 장치의 최종 수요처인 현대자동차(주) 등의 요청에 따라 주변 장치(부품)의 제작도면 총 127건의 제공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회의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요구함

조치사항(시정명령)
 최종 수요처의 입장에서는 로봇과 그 주변장치는 공장자동화 관련 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봇과 그 주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마모 등으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의 장기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매뉴얼과 그 주변 장치의 제작도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법정 기재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주)OO화학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 결정 제2015-031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를 중국 남경법인 내재화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피심인은 합의 결렬 이후 해당 기술자료를 활용하거나 추가의 자료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추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하였음.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남경법인과 거래중이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룸

조치사항(고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기와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명백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함

대금 지급 단계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법 제1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만약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외담대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외담대 포함)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위 사항을 적용한다.

■ 어음할인료(외담대 포함, 7.5%)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 x 7.5% x 초과일수/365일

■ 지연이자(15.5%) 지급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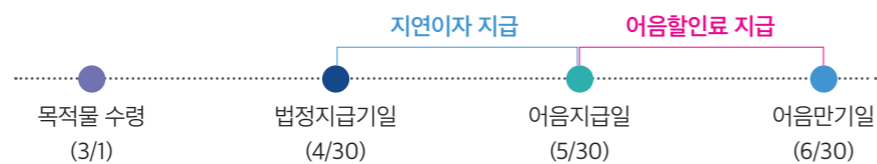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 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 예시

1) 목적물 수령일 30일 후 어음(만기 60일자)으로 지급한 경우 법정지급기일 30일 초과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 필요



2) 법정 지급기일 초과 후 어음(만기 60일자)으로 지급한 경우 법정지급기일 30일 초과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및 어음 60일 만기일에 대한 어음할인료 지급 필요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목적물의 수령일이 명확하게 시스템에 기표되고 있는지 확인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지연 시 15.5% 지연이자 지급)
- 발주자(고객)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 발주자(고객)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발주자(고객)로부터 받은 어음(외담대 포함) 만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 하도급대금이 가압류되었을 경우 대금지급기일(60일) 이내에 공탁해야 함
-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위의 사항을 적용

QnA

- Q 발주자(고객)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A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Q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원사업자는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해도 되는가?
A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원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자(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지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보류하는 효력은 없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60일) 이내에 공탁 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이 있을 경우 지정된 채권자 및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함
- Q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A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을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 보아야 함.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음

사례 OO전기(주)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행위 - 의결 제2017 -048호

사실관계

OO전기(주)는 111개 수급사업자에 26개월간 38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조치사항(과징금, 시정명령)

OO전기(주)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주)OOO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의결 제2023 -101호

사실관계

(주)OOO테크는 기계장비 등 2건의 제조를 위탁한 후 69,300,000원 110일 초과, 69,300,000원 108일 초과, 144,980원 118일 초과, 289,960원 17일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음

조치사항(과징금, 시정명령)

OO전기(주)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되고,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한 할인료 총 7,630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

② 선급금 지급 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고객)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지급조건(현금비율, 만기일 등)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15.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발주자(고객)로부터 받은 지급조건(현금비율 만기일 등)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지연15.5%) 지급해야 함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계산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법 제13조)와 동일함
- 발주자(고객)로부터 받은 어음(외담대 포함) 만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 하도급대금이 가압류되었을 경우 대금지급기일(60일) 이내에 공탁해야 함
-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위의 사항을 적용

QnA

- 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시점은 언제인가
- A**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Q**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의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 A**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차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함

사례 (주)OOOO의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의결 제2016-123호

사실관계

(주)OOOO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조치사항(시정명령)

(주)OOOO는 OO전기(주)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③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법 제1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고객)로부터 증액(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추가비용이 들 경우)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감액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발주자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 하도급대금의 증액 및 감액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 변동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정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원사업자가 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 15일 이내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15.5%를 지급해야 함

QnA

- Q** 계약금액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 A**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 할 수 있음
- Q**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당초 하도급계약을 수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시켰고, 그 이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금액을 반영시켜 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조정금액 비율대로 다시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대로 재정산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000건설(주)의 대금 증액분 미지급 행위 - 의결 제2013-158호

사실관계
000건설(주)는 공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으나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법정기한인 30일을 초과할 때까지 증액하지 아니함

조치사항(시정명령)
000건설(주)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과 같이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00건설(주)의 발주자의 대금 증액분 미지급 행위 - 의결 제2018-223호

사실관계
00건설(주)는 공사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후, 해당 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00건설(주)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식재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④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법 제16조의2)

-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 공급원가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조건

-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 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거부 금지
- 원사업자는 성실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임해야 함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서 및 협의결과 등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면을 보존하고, 조정 결과를 문서화해서 보관해야 함

QnA

- Q**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은 후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 A**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법하지 않으나 그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해야함
- Q**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A** 쌍방이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쌍방 중 일방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가능

사례 000건설(주)의 하도급대금 조정 금지 특약 설정 행위 - 의결 제2017-167호

사실관계
000건설(주)는 A사에게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과 별도로 특약조건 등을 추가하여,
추가작업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공사대금 조정신청 및 추가 정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음.

조치사항(시정명령)
000건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추가 작업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공사대금 조정신청 및 추가 정산을 금지하는 조항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다시 설정하여서는 아니됨

㉔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시자료
 -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제시방법
 -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2) 자료의 주요 목차
 -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금지
- 당사 생산물품, 원자재 등을 매각할 시 대금지급조건(상계조건 포함)에 관해 합의하여야 함
- 당사 설비 등을 매각 또는 임대할 시 관련 계약서를 사전에 체결하고 대금지급조건(상계조건 포함)에 관해 합의하여야 함

QnA

- Q 수급사업자에게 사급재 및 설비 판매(임대 포함)하고 그 대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상계)하고 지급할 경우 위법 여부?
- A 쌍방이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납품대금 공제 조건에 합의하였을 경우 위법하지 않음. 단, 쌍방이 합의하 서면 보존이 필요함

사례 000(주)의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의결 제86-23호

사실관계

(주)000는 화장품류, 비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3회에 걸쳐 피심인에게 포장용기, 부품 및 표재 등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인 A사등 63개 거래업체에게 148,661,253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 등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동 판매대금을 당해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에 공제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시정명령)

(주)000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사 제품의 강매행위 및 동 판매 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와 피심인이 강매한 물량 중 수급사업자 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3개 중앙일간지에 각 1회 게재토록 함

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법 제13조의3,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과 관련하여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여부와 분쟁 조정의 신청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미공시, 지연공시, 주요 공시, 주요 내용 누락 공시, 거짓 공시 등 공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시 관련 업무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공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기타

①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법 제7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 예외적 허용

- 미개설 사유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혜택을 보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1)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 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 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2)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또는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3)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개설은행에 연체 또는 대지급 상태에 있을 경우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함
- 수출용 물품에 대해 월 1회 이상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법정기한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경우 : 익월 10일까지
 -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 익월 25일까지

QnA

- Q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위법 여부?
- A 수급사업자와 합리적 협의를 통해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지 않음. 단, 해당 합의서면 보존 필요

사례 (주)OO의 내국신용장 개설 지연 행위 - 의결 제86-142호

사실관계

(주)OO는 A사의 4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인 섬유류 제품을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주어야 함

조치사항(시정명령)

(주)OO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②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

-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세환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1)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2)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 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와 관세환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함
-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QnA

- Q 관세환급의 기초자료인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를 수급사업자의 지연 제출로 인해 관세환급처리 기한 초과로 관세환급이 불가한 경우 위법 여부?
- A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단 근거 서류 보존이 필요함
- Q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후 정산제에 따라 원사업자가 관세정산 받는 시점(분기단위)에 수급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 여부?
- A 원사업자가 분기별 정산으로 인하여 60일을 초과하여 환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하도급대금의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사례 OO(주)의 관세환급금 미지급 행위 - 의결 제92-145호

사실관계

OO(주)는 A사에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여 수령한 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용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환급액 400만 원을 기납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함

조치사항(시정명령)

수출할 물품을 제조, 위탁하여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외적 허용

-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시 특정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단 요구사유가 합리적이고 구속력이 있어야 함
-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상품 및 서비스 등 구매강제 금지
- 계열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등 구매강제 금지

QnA

Q 원사업자가 계열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할 경우 위법 여부?

A 합리적 사유 없이 계열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강제하였을 경우 위법함

Q 고객(발주자)과 계약 체결 시 특정 부품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 시 위법 여부

A 합리적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에 명기하였을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④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사급재)를 제공하고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시 하도급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해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장비를 임대 또는 매각하면서 그 공급조건이 수급사업자가 직접 임대 또는 매입하는 조건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해서는 아니 됨

QnA

Q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사급재)의 단가가 수급사업자가 직접 구입할 때보다 높을 경우 해결방법

A 동일한 원재료를 수급사업자가 직접 구입하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공급하는 것은 위법함.

원사업자는 단가차이 발견 시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단가를 인하하거나, 원재료(사급재)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⑤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지 행위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매출감소, 환율 영향 등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거래 개시, 발주물량 증량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QnA

Q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물량 증량을 조건으로 원사업자의 불용설비를 매각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A 당해 하도급거래와는 관계없는 설비를 매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함

Q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기회를 부여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

A 당해 하도급거래와는 관계없는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 조건을 정하는 행위는 위법함

사례 ㈜OO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의결 제2014-101호

사실관계

㈜OO은 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우수 및 오수 공사를 건설위탁하기 위한 견적 의뢰업체(입찰초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골프회원권 분양을 하도급 계약 체결 조건으로 정하여 해당 골프회원권을 분양하였고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별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미분양된 용인 보라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는 약속서를 받고 이를 분양하였음

조치사항(과징금)

피심인 ㈜OO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또는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당해 수급사업자가 분양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⑥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 금지 행위

- 위·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2차 수급사업자 선정, 계약조건 등 자신의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계없이 자신 또는 특정한 자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현황 등을 실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1) 원가관련 정보 :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등
 - 2) 다른 사업자와의 매출 관련 정보 :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
 - 3) 경영전략 관련 정보 : 제품 개발 및 생산, 판매, 신규투자 계획 등
 - 4) 영업 관련 정보 :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조건 등
 - 5) 다른 사업자와 거래 시 이용하는 전산망 접속 정보

■ 허용 행위

- 공정거래협약에 의거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의 행위
 - 1) 2차사와의 협약을 권유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사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3) 2차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행위
-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할 경우 2차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1)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3)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 4)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 5)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 6)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 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계없는 사안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
- 1차-2차 협력사 간 계약(단가결정, 원재료 업체 지정 등)에 대해 개입 금지(경영권 침해)
- 2차 협력사의 원인으로 인해 당사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 1차-2차 협력사간 당사가 2차 협력사를 지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면 작성 필요

QnA

Q 목적물의 단가변경 목적으로 원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위법 여부

A 경영상 정보 요구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단가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원가자료일 경우에 위법하지 아니함

Q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의 종단을 요구할 경우 위법 여부?

A 원사업자가 기술유출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할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사례 ㈜000000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의결 제2022-268호

사실관계

㈜000000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 및 운용하여 왔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000000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000000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준수여부를 감시하였다. ㈜000000은 경영관리 기준 준수여부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하고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하였다.

조치사항(시정명령 및 과징금)

피심인은 협력사에게 임원임기, 임원의 처우, 협력사의 지분구성,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 등 협력사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심인은 과징금 5억 8천만 원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⑦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8조) ※징벌적(3배) 손해배상 및 원칙적 고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사례 000000㈜의 보복조치 금지 행위 - 의결 제2013-268호

사실관계

수급사업자인 A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000000㈜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00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함.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주사를 비롯하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음. 신고 사실을 인지한 피심인은 A사 대표를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물량 이후 추가물량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사에 제출한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은 기본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A사에게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였음. 이후 A사가 제작하던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위탁계약을 B사와 체결함으로써 A사와의 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음

조치사항(고발)

000000㈜는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저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3 | 발주자의 의무사항

㉔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으로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 금지

사례 ○○(주)의 탈법행위 - 의결 제2017-001호

사실관계

(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및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고, 피심인은 위원회의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피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받거나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다시 회수함

조치사항(고발)

(주)○○은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후 법인명의로 계좌로 지급받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과 같은 탈법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기성부분 또는 물량투입 등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함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인가 취소 등의 이유일 경우 : 15일 이내 이행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 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일 이내 이행
- 다만, 발주자가 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 등을 적시한 소명자료를 위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절차
 - 1) 수급사업자의 지급 요청(발주자에게 해당 요청이 도달한 때부터 효력 발생, 수급사업자가 입증)
 - 2) 발주자는 공탁사유가 있을 때 공탁 가능(직접지급 효력 발생 전 가압류 등)
 - 3)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사례 (학)0000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건 - 의결 제2011-139호

사실관계

- (학)0000은 △△종합건설에게 '여생활관 증개축 공사'를 위탁하였고, △△종합건설은 위 공사의 일부를 □□건설에게 재위탁하였음
- △△종합건설은 □□건설에게 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의 목적물을 4회에 걸쳐 인수하였음에도 기성분 중 일부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건설은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도급 공사대금이 △△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철강에 의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의 직접 지급 요청을 거부함
- 이후 위 가압류가 취소되고 □□건설은 다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송달된 직후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종합건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건설이 직접 지급 요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조치사항(고발)

(학)0000은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인 □□건설에 위탁한 '여생활관 증개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인 □□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금지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04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

- | | |
|------------------|----------|
| 1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 6 합의단계 |
| 2 인지단계 | 7 의결 |
| 3 조사단계 | 8 의결서 송달 |
| 4 위원회 상정 | 9 불복절차 |
| 5 위원회 심의 | |

1 |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 공정위 소관 법령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 총 14개 법률



2 | 인지단계

직권인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고·분쟁조정

- 누구든지 이 법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1) 공정거래법
 -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 2) 하도급법
 -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

3 | 조사단계

조사의 개시일 등

신고사건	신고접수일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사건의 등록

- 심사관은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께 있어 다음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해야 함
 - 위반혐의 사실을 인지 또는 자진신고 받은 경우 :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 신고 받은 경우 :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사건의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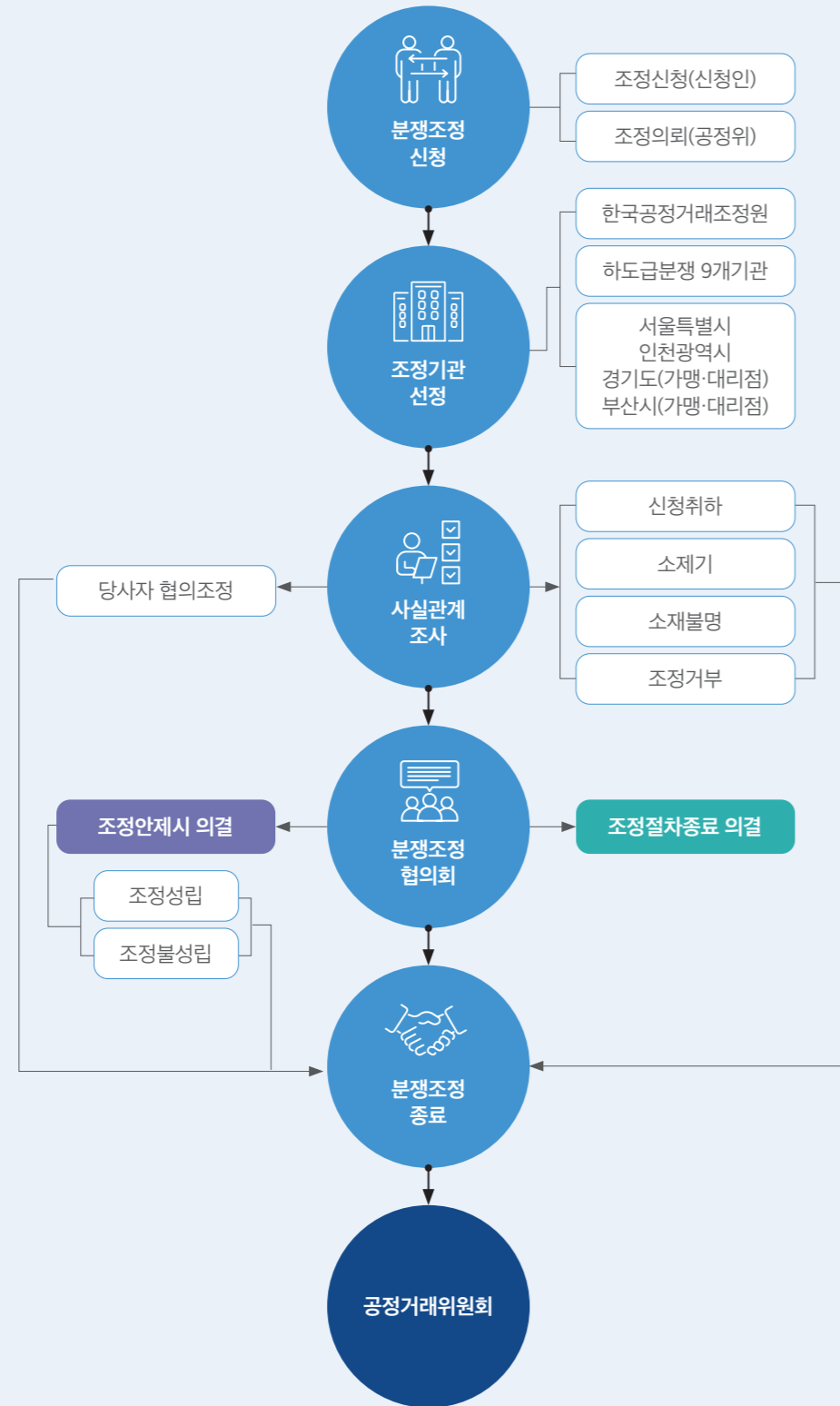
- 심사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및 부장지원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전결처리 해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가 필요함
 -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함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이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권고 내지 고발 등 결정 불가	

분쟁조정처리절차

분쟁조정은 아래의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처리절차

심사절차의 개시

- 담당 심사관은 다음의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 신고사건 :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인지 또는 자진신고 사건 :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날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처장 전결 연장 가능)
 -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 및 피조사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

위반행위의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 사업자, 사업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① **조사공문 교부**
 - 현장조사를 개시 전 피조사업체에 교부하여야 함(조사기간, 목적, 대상, 방법 등 상세히 설명)
- ② **조사범위**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 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부서에 인계할 수 있음
- ③ **자료 등의 수집·영치**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닛,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자료 삭제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자료를 검색 후 열람·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디지털증거매체로부터의 증거 수집 절차 및 방법에 따름
 -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함
- ④ **진술조사 등**
 -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하여야 함
 -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⑤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 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 요청이 조사의 개시,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의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연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한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
 - 5)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음

⑥ 조사과정 및 사건심사의 기록

-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수집·제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업체에 교부하여야 함
-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조사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접수하는 경우 사건심사기록(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매 장마다 연수를 기재하여야 함

⑦ 조사시간 및 기간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조사시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 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이를 진행하여야 함
-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함.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함
- 조사공무

⑧ 조사방해

-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조사 등의 연기신청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천재지변
 - 합병·인수, 회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행강제금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의 결정으로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0.0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의 0.00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 취득 또는 새로운 회사 설립에 의한 기업결합 : 취득·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합병에 의한 기업결합 : 합병에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영업양수에 의한 기업결합 : 영업양수 금액
- 다만 동조 1항2호에 따른 임원지원의 겸임의 기업결합은 매 1일당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
 - 공정거래법은 하기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1)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관련 시행령 : 제23조의3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 2) 자료 제출 명령(관련 시행령 : 제57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 3) 동의 의결(관련 시행령 : 제58조의2 동의의결된 시정방안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동의를결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를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동의의결의 절차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신설 2023. 6. 20.>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에게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 동의의결의 취소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동의의결 관련 이행강제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 위원회 상정

심의절차 개시

-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 개시

※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 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각 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 3) 하도급법 사건에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5) 사망, 해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 6) 기타 각 법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사보고서 제공 및 의견서 제출

-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된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의견청취

-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 3) 전원회의 안건의 경우
 -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주심위원 : 소회의 의장 / 전원회의의 경우 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 1인
-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함
- 심의, 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요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임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됨
 -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사건
 -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 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 5)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함
- ③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④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 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함
- ⑥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 위 ① 또는 ②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음

심의 부의

- ① 각 회의의 의장은 아래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의하여야 함
 - 1) 심사보고서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
 - 2)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
 - 3)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

- ②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

심의기일 지정 및 통지

- ① 의장은 심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회의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이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
- ③ 의장은 당해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함
- ④ 의장은 심의 중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관·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를 속개할 수 있음
 - 1)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참고인, 이해관계인의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기타 2회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함. 다만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음
- ⑥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5 | 위원회 심의

심의의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함.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에 대한 참관석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은 참관인 수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음

심판정 질서유지

-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함
-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장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름

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 출석

-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해야 함.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를 할 수 있음
-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심의기일지정 및 통지를 할 수 없어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음

심의절차

- ① **인정신문** : 의장이 피심인 또는 대리인*,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문
 - * 대리인 : 피심인은 변호사 또는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함
 - * 참고인 :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외인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음
- ② **모두절차**
 -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의장은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의장은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③ **상호질의**
 -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음
 -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④ **심사관의 진술**
 -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함
- ⑤ **피심인의 최후 진술**
 -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기타 심의에 관한 사항

①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피심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사업성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의결서 등에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개할 수 있음

② 증거조사의 신청 등

-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 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주소·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함
-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함
-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함
-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음

③ 참고인 신문 방식

- 참고인 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 진행함
- 각 회의의 의장 및 위원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음
- 각 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음
-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음
-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함
-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각 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추가로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신문할 수 있음

④ 감정인의 출석 :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⑤ 재심사 명령

- 각 회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음
-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를 발견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 합의단계

의결 결과 유형

①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각 회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로 의결할 수 있음
- 심사 절차를 개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 종료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무혐의

-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음
-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 촉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③ 종결처리

-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음
- 1)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 각 회의는 위의 사유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음

④ 경고

- 각 회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음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2)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 절차를 개시했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 4)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음

⑤ 시정권고

- 각 회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도도입 이후 최초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5)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사업자의 경우

㉔ 시정명령 등

-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음
- 각 회의는 법 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음

㉕ 고발 등

-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음
-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결정할 수 있음

사례 (주)OO엔지니어링의 시정조치불이행행위 - 결정 제2023-008호

사실관계

(주)OO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 A에게 하도급 대금 26,40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음. 2022. 3. 23.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정위로부터 2022. 5. 4. 및 같은해 6.8.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촉탁 공문을 수령함.

조치사항(고발)

공정위의 시행명령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명령 불이행하였으므로 고발

심사관의 전결 등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에서 정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음

7 | 의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 각 회의는 사건에 대한 의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함

의결서 등의 정정

•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8 | 의결서 송달

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 심판관리관은 의결 등이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 다만 약식의결서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함

•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음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담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해야 함

-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음
- 각 회의는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의결할 수 있음

9 | 불복절차

이의신청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시정조치명령의 집행 정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의신청의 처리

-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됨
-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이의신청 심사보고서

-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
- 심사관은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음)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함

이의신청의 취하

-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

심의방식

-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으로 함.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으로 할 수 있음
-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으로 함.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함

재결의 구분

-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함
-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함
-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함

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소의 제기

-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함

05

공정거래협약

- 1 공정거래협약의 개념
- 2 공정거래협약의 세부 내용
- 3 공정거래협약 절차
- 4 협약이행 평가 및 인센티브
- 5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1 | 공정거래협약의 개념

대기업, 중소기업이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 및 동반성장과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협약

공정위는 2007년 9월부터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의 삼각 공조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제도를 도입, 운용 중

2 | 공정거래협약의 세부 내용

자율적 공정거래준수 시스템 구축

구분	내용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이전 : 대기업의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방식 마련(수의, 일반경쟁, 제한경쟁 계약 등) ▶ 계약 단계 : 중소기업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계약서 교부 및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준 및 절차 마련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결제조건 결정 - 기타 관련 법령 위반 조항설정 금지 ▶ 계약이행 단계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충실한 계약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가격, 환율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행 - 단가 인하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합의 및 서면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선정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선정운영기준 및 절차의 객관화 및 투명화 - 협력업체 선정등록 결과의 통지 - 등록된 협력사에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구분	내용
내부심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 불공정거래 감시기구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사전 예방 - 하도급(구매담당) 관련 임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내용, 단가조정 등에 대해 심의(월1회 이상)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불공정거래 감시기구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사전 예방 - 발급대상 서면 7개(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등) - 보존대상 서면 14개(발급대상 서면 7개, 납품단가 조정서류 등 7개)
표준 하도급계약서	▶ 바람직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 부당특약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 금지 -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사항 적용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지원 약속

구분	내용
납품단가 조정	▶ 대기업이 협력사에 단가변동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인상 조정
매출 확대	▶ 납품, 물량판로 개척 등을 통해 협력사에 대해 매출확대 지원
결제조건 개선	▶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구입비 등의 자금을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무상 또는 대여) -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여 -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알선·중재(네트워크론 등) - 혼합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협력사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 -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의거 신용보증기관에 보증기금을 출연하여 대출을 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기술이전, 연구개발 등의 지원과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 기술지원 : 기술이전, 연구개발지원, 특허권 제공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제, 공동특허출원 등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	▶ 교육훈련 : 협력사 임직원에게 대한 경영, 원가절감, 노무교육 등 지원 ▶ 인력지원 : 대기업의 중견(기술)인력을 무상파견 지원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약속

구분	내용
기타 지원사항	▶ 구매담당 임원 평가 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 위탁 관련 정보 통합시스템 운용,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및 운용,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 사항, 매입액 적극적 조정,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원,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
2차 협력사 지원	▶ 1차 협력사의 2차협력사 지원방안 도입, 운용 실적 - 1차, 2차 협력사간의 협약 체결,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한 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실적, 1차~2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지원프로그램 운용 실적

협력사는 생산성 향상 및 2차 협력사 지원 등 동반성장 노력을 약속함

1

단가조정 요청 시 조정요건 해당 사유를 명시,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 요청

4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내용의 이행

2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3

윤리규정 준수 및 기타협력사의 상생협력 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6

3 | 공정거래협약 절차

협약준비

1

- ▶ 대기업의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도입여건 분석 및 결제조건개선, 자금지원 여력 등 분석

협약체결

2

- ▶ 대기업과 중소기업사가 개별협약을 체결 (기간 : 1년 원칙, 연장 또는 재협약 가능)
- ▶ 협약선포식을 통해 대외 공표

협약이행

3

- ▶ 협약서에 제시된 지원 및 개선목표 달성 노력
- ▶ 공정위의 협약내용 이행 독려(중간점검, 회의 등)

기간만료

4

- ▶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시 협약기간 만료

이행평가

5

- ▶ 대기업 : 협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이행평가 자료 제출
- ▶ 공정위(평가위원회) : 다음 분기에 평가 완료

인센티브 제공

6

- ▶ 평가결과 '양호(85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 인센티브 : 하도급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

재협약

7

- ▶ 평가 이후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재협약 체결

4 | 협약이행 평가 및 인센티브

협약이행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시기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시(협약기간 1년 원칙)
평가주체	협약평가위원회(공정위 외부 / 내부 인사)
평가방법	대기업의 협약이행 실적자료 점검, 현장확인 및 협력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 실시
평가항목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무제한)

인센티브

협약이행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분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등급	최우수	95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 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 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동반성장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5 |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이미 평가등급이 결정되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때에는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을 취소한다.



06

개인정보보호법

- 1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3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4 안전조치의무
-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6 벌칙

1 |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란?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우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음에 기초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수집 출처 통지, 이용 제공 내역 통지, 파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영상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가명정보 처리, 결합, 안전조치, 적용제외
-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국외 이전 중지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CPO/국내대리인, ISMS-P, 영향평가, 유출통지 신고, 노출 삭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권, 정정 삭제권, 처리정지권, 동의철회권, 전송요구권, AI결정 대응권, 손해배상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업무, 조정신청, 사실조사, 분쟁조정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 요건, 진행
제9장 보칙	적용 제외, 금지행위, 사전 실태점검, 과징금, 고발 및 징계권고, 개선헌고
제10장 벌칙	형사처벌,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용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사망,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임원진과 업무담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 가능
-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음. 정보주체와 관련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함. 생년월일의 경우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

QnA

- Q**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A 빌딩의 출입기록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
- Q**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A 하급심 판례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가능성이 있음에 근거하여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도 개인정보로 보았음(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 8. 9. 2013고단17 판결)
- Q**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A 자동차는 그 소유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와 함께 차명,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보호위원회결정 제2019-16-260호)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명처리의 기술이나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제2조제1호의2)

처리

-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 생성에서부터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
-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존,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귀속 및 행사주체
- 살아 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원칙(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반영

OECD프라이버시 8원칙	GDPR 제5조	개인정보보호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1원칙)	데이터 최소화(1.c항)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 수집(제1항)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정보 정확성의 원칙 (2원칙)	정확성(1.d항)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제3항)
목적 명확화의 원칙 (3원칙)	목적 제한(1.b)항	처리목적의 명확화(제1항)
이용제한의 원칙 (4원칙)	저장기간 제한(1.e항)	목적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제2항)
안전성 확보의 원칙 (5원칙)	무결성과 기밀성(1.f)항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6원칙)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1.a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7원칙)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5항)
책임의 원칙 (8원칙)	책임성(2항)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범위 등의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공개 등의 의무를 지고 있음(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30조, 제39조의3제1항 등)
-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의를 금지하고 있음(제22조 등)
- **개인정보의 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
-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책임의 전환(제39조 제1항 단서), 분쟁조정제도(제40조~제50조)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도(제51조~57조),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39조의2 및 제39조3항) 등을 도입하고 있음

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서 작성(자필서명), 웹사이트 화면 내 동의, 통화 녹취 등을 통하여 입증
 - 포괄동의 금지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명함'의 경우 명함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별도 동의 필요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5조 제1항제2호(법률 규정 또는 법령 상 의무 준수), 제3호(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및 제5호(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됨
- **예외**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명·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3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민감정보란**
 -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즉,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전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제24조제1항, 영 제19조제1항 각 호)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가 허용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누구든지 법이 규정하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운영 및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시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 촬영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촬영 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함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 또는 열람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4 | 안전조치의무

제도 취지

- 개인정보는 한번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면 정보주체에게 비가역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이 중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그 당시의 최신 보안 기술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내용

- **관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 안전조치로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영 제30조제1항제1호)
- **기술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영 제30조제1항제2호~제5호)
- **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잠금장치의 설치 등(영 제30조제1항제6호)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

5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법 제35조)

개인정보 전송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필수 개인정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위가 전송 대상으로 의결한 개인정보
- **전송요구권은 다운로드권**(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 **이동요구권**(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권

전문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일정한 요건을 충족한)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으로 나뉨

- 신설규정, 2024. 3. 15부터 1년 이내 시행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법 제35조)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제 36조 제1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1문).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제36조 제3항, 제4항, 영 제43조제3항 후단, 영 제44조제2항)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화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37조의2)

- 자동화된 결정 : AI등을 적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

- 정보주체의 권리
 - 결정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결정거부, 설명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제3항) :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 제외, 자동화가 아닌 사람에 의한 개인정보 재처리, 요구 내용에 대한 설명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제4항)

- 신설규정, 2024. 3. 15. 시행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제 36조 제1항)

6 | 벌칙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재 이유
제70조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행정기관의 각종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처리의 오류 발생으로 일반 국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업무방해라는 고의적·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강력 제재 →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불법 유통시킴으로 인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제기
제71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포함) 2. 불법정보인 사정을 알고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포함) 3. 민감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4.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을 위반 한 자 4의2. 가명정보 결합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포함) 4의3.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4의4. 개인정보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6.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 하도록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 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포함) 6.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유출, 누설 등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어 정보주체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개인정보의 전전유통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유출시 정보 주체의 사생활 등 권익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 → 가명정보의 재식별행위 등 의무위반 발생 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 → 정보통신망에 기반한 서비스의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보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
제72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 능을 사용한 자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 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 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포함)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확대·회전하거나 녹음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규제 필요 → 피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얻는 행위는 목적 외 이용·제공보다는 가벌성이 약하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규정함 → 이 법의 규율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비밀누설 등 행위와는 달리, 위원회 위원 등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규정

1 | 청탁금지법 개요

청탁금지법이란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적용대상

-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결정거부, 설명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제3항) :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 제외, 자동화가 아닌 사람에 의한 개인정보 재처리, 요구 내용에 대한 설명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기타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 등 외에도,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제24조)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제4항)

07

청탁금지법

- 1 청탁금지법 개요
- 2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3 금품 등의 수수금지
-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 제한(제10조)
- 5 청탁금지법 위반 시 제재
- 6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절차

2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제5조 제1항)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1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8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2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9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3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10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4	병역 관련 직무 11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5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2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6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3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7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14

청탁금지법이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
- “누구든지”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는 법인은 제외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한 부정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대표권 있는 자를 포함)의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사업주인 법인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을 위반하여**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례·규칙도 포함(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 673(병합))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함
 -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함
 - 판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의 상황, 거래자의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제5조 제2항)**

-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 금품 등의 수수금지

내용(제8조)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제1항)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제2항)

**제재대상이 되는
금품 등**

-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직무관련성 불문)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 원 이하인 경우(직무관련성 필요)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동일인”으로부터
“1회”**

- 동일인 여부는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법인은 실제 금품 등 제공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 금지의무가 있는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은 제외되며,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직무관련성 불문))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ex. 1차 식사 + 2차 술)
 -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규정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등 차이 존재
-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2019과11061)

금품 등의 의미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가액 산정은 개별 행위마다 별도의 기준으로 책정함
 - 제공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함
 - 동일한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의 의사표시·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제공 행위)가 성립 제공자가 공직자 등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성립 가능

금지 행위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제공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함
 - 동일한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의 의사표시·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제공 행위)가 성립 제공자가 공직자 등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성립 가능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사실혼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를 공직자 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제재대상

예외 사유 (제8조 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 제한(제10조)

입법취지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

외부강의 등의 범위

- 외부강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 원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으로 설정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1회의 강의 당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 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외부강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

5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제재

제재 사항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타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자 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 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1)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고자 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 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 (상당한 주의와 감독)

-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6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절차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HYUNDAI TRANSYS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발행인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발행부서 현대트랜시스 법무팀

발행일 2025년 10월
